

전발연 2008-R-19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효율적 운영방안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2008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이동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완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임지원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김륜희	한국토지공사 연구원
	한창선	정읍방사선연구소 연구전략팀장
	한금수	순창 장류연구사업소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교수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
	이창원	전북대 복분자 사업단 사무국장
	김건희	전주대학교 교수
	문연자	원광대학교 교수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는 지역특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지역성장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성과 및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에 있음.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의 세 부문임.
 - 첫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내용 및 현황 분석
 - 둘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 셋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지표의 효율적 운영방안
- 연구의 방법적 특성은 연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과 함께 피평가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음.
-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사례연구를 통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함.

II.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1. 평가지표 개발의 기준

- 일반적으로 사업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는 ①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② 개선가능성(improvability), ③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④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⑤ 충분성(sufficiency), ⑥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등을 들 수 있음. 이를 기준으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지표 개발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에서도 평가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둘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대상사업의 개선이므로 평가항목의 선정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함.
- 셋째, 통제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평가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넷째, 사업평가의 항목은 중요도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의 수를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각 항목 간의 구분이 모호한 평가항목을 제외함.
- 여섯째, 평가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속성을 유지케 함으로써 평가업무·평가관리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도별 개선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함.
- 일곱째, 사업의 진행단계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평가체계 속에서도 평가시점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융통성을 부여함.

2. 평가대상의 그룹화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상 평가대상의 그룹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검토됨. 첫째, 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방안(시가 시행주체인 사업, 군이 시행주체인 사업). 둘째, 사업내용 및 도 주무부서에 따른 그룹화 방안(문화관광중심사업, 산업육성중심사업). 셋째, 사업성격에 따른 그룹화 방안(신규사업, 계속사업)

- 각 그룹화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평가 준거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첫째,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또는 가중치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음. 둘째, 사업내용 등에 따른 그룹화는 1차 평가의 경우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도 공통평가지표만으로 평가함. 그러나 2차 평가에서는 사업내용 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함. 셋째, 사업성격에 따른 그룹화는 1차 평가의 경우 사업내용에 따른 그룹별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함. 그러나 2차 평가의 경우에는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Ⅲ. 평가지표의 개발

1. 기본구성

- 평가지표의 기본구성은 사업의 전 주기적 관점에 맞추어 사업기획부문, 사업집행부문,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으로 이루어짐.
- 각 평가부문별 평가지표의 틀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짐.
- 평가지표는 그룹화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평가하는 ‘공통평가지표’와 그룹별로 평가하는 ‘개별평가지표’로 구분됨.
- 공통평가지표는 평가단계에 따라 1차 평가에만 사용될 평가지표, 2차 평가에만 사용될 평가지표,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에 사용될 평가지표로 세분됨.
- 또한, 1차 평가에 사용할 공통평가지표는 평가대상 시·군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평가지표(이하 ‘순위지표’라 함)와 순위의 결정에는 사용되지 않으나 평가를 통해 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평가지표(이하 ‘컨설팅 지표’라 함)로 세분됨.

2.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1) 사업기획부문

- 사업기획부문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으며, 그 내용이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한가에 대하여 평가하는 부문임.
- 사업기획부문의 평가항목은 ‘추진근거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예산계획의 적절성’의 3항목이며, 세부평가항목의 수는 6개, 평가지표의 수는 14개임.

2) 사업집행부문

- 사업집행부문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각 시·군이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사업집행부문의 평가항목은 ‘추진주체의 의지와 역량’, ‘사업수행체계’, ‘목표달성도’,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의 4항목이며, 세부평가항목의 수는 10개, 평가지표의 수는 16개임.

3)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

- 사업효과의 유무는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잣대임. 또한 사업모니터링부문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지를 점검·평가하고, 그 정보를 정책결정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의 개선을 꾀하는 필수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임.
-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의 평가항목은 ‘사업의 효과성’,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사업개선 노력’의 3항목이며, 세부평가항목의 수는 5개, 평가지표의 수는 9개임.

<표 1>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지표 총괄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기획	1. 추진근거의 타당성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	
		2.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	1.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3.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	
	2.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 2. 사업목표와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2. 수요추정의 유무 및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1. 수요추정의 유무 2.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3. 예산계의 적절성	1. 재원구성의 적절성	1.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1.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2.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2.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2. 예산확보계획의 합리성	1.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1.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2. 예산확보계획의 합리성	2.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3.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4. 미확보재원 마련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사업집행	1.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1.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횟수 2. 전담조직의 유무 3. 전문가 확보의 여부
2.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도			1.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횟수 2. 추진협의체의 구성의 합리성	
3.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 여부 및 정도			1.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횟수	
2. 사업수행 체계		1.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1.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정도	
		2. 도 지침의 수용정도	1.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 정도	
3. 목표달성도		1. 성과지표 달성도	1. 성과지표의 평균달성도	
		2. 예산확보정도	1.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2. 당해 연도 도비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	
		3. 예산집행정도	1. 당해 연도 예산 대비 집행율 2.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의 집행 여부	
4.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1. 추진성과	1. 민간투자 유치실적 2.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	
		2. 홍보실적	1. 주민인지도	

(계속)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진행	1.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1.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횟수	
		2. 지지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도	2. 전담조직의 유무	
		3.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 여부 및 정도	3. 전문가 확보의 여부	
	2. 사업수행 체계	1.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1.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횟수	
		2. 도 지침의 수용정도	2. 추진협의체의 구성의 합리성	
	3. 목표달성도	1. 성과지표 달성도	1.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횟수	
		2. 예산확보정도	1.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정도	
		3. 예산집행정도	1.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 정도	
	4.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1. 추진성과	1. 성과지표의 평균달성도	
		2. 홍보실적	1.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사업성과 및 마그피제	1. 사업의 효과성	1.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2. 당해 연도 도비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
			2. 주민인지도	1. 당해 연도 예산 대비 집행율
2.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1. 모니터링체제의 구축여부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2.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의 집행 여부	
		2. 문제해결 능력	1. 민간투자 유치실적	
3. 사업개선 노력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2.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노력	1. 주민인지도	
1. 사업의 효과성		1.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1. 주민 만족도	
2.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1. 모니터링체제의 구축여부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2. 이용자 만족도	
2. 문제해결 능력		1. 문제해결 능력	1.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여부	
3. 사업개선 노력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2.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노력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노력	1. 단계별 추진목표 및 예산 등 계획 변경 유무	
1. 사업의 효과성		1.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2. 부진사업의 사유파악과 대책수립 여부 및 타당성	
2.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1. 모니터링체제의 구축여부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1. 연계사업발굴의 유무		
2. 문제해결 능력	1. 문제해결 능력	2. 세부사업 완료 후 활용 여부		
3. 사업개선 노력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1.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의 여부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노력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노력			

3.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 첫째, 적절성, 타당성, 달성도, 횟수 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판별력을 높이기 위해 리커드 척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함.
- 둘째,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에 대한 배점은 4점, 3점, 2점, 1점으로 함.

- 셋째, ‘여·부, 유·무, 포함·미포함’ 등과 같이 ‘O’나 ‘X’ 형의 평가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O’는 2점, ‘X’는 0점으로 함.
- 넷째, 평가그룹별 각 시·군의 순위는 순위평가지표에 대한 측정으로 결정되며, 각 시·군별 최종 점수는 세부평가항목에 배정된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함.

4. 평가지표의 세부적 운용방안

1) 평가단계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분

- 개발된 평가지표를 평가단계에 따라 1차 평가에만 사용할 평가지표, 2차에만 사용할 평가지표, 1차와 2차 모두에 사용할 평가지표로 구분함.
- ‘마스터플랜의 수립여부’ 평가지표 한 가지만은 1차 평가에서 사용되나, 2차 평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 개발된 평가지표 가운데 1차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는 평가지표는 ‘성과지표의 평균달성도’, ‘주민 인지도’, ‘주민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의 여부’ 등 6개의 평가지표임. 1차 평가에 사용할 평가지표는 총 33개 임.

2) 1차 평가에 사용할 평가지표의 역할 구분

- 1차 평가의 경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첫 평가이고, 그 목적이 각 시·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목적이 큼.
- 따라서 1차 평가를 위해 선정된 33개의 평가지표를 ‘순위지표’와 ‘컨설팅 지표’로 구분함. 그리고 컨설팅지표는 2차 평가에서 순위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1차 평가에 사용할 33개의 평가지표 가운데 순위지표로 사용될 평가지표는 14개이며, 컨설팅지표로 사용될 평가지표는 18개임.

<표 2> 1차 평가지표에 사용할 순위지표 총괄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기획	추진근거의 타당성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여부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
		예산계획의 적절성	재원구성의 적절성
사업집행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 지원 정도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횟수 전담조직의 유무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 사회의 협력 정도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횟수 추진협의체의 구성의 합리성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 여부 및 정도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횟수
	사업수행체계	도 지침의 수용정도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여부
사업집행	목표달성도	예산확보 정도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당해 연도 도비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
		예산집행 정도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의 집행 여부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추진성과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문제해결 능력	세부사업별 부진사업의 사유파악과 대책수립의 여부 및 타당성

5.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1) 평가절차

- 평가는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① 1단계 : 평가대상 확정 및 평가계획서의 작성(전라북도)
 -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서를 작성
- ② 2단계 : 평가단, 평가팀,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전라북도)
 -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을 신규사업평가팀과 계속사업평가팀으로 구분
 - 평가단장과 평가팀의 간사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③ 3단계 :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의 취합 및 정리(전라북도)
 - 각 시·군에서 작성한 평가자료를 취합하고,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정리
- ④ 4단계 : 평가단 회의 개최 및 평가실시(평가단)
 -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본 평가의 의미와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하여 평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 ⑤ 5단계 : 평가결과의 취합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평가단 및 전라북도)
 -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전라북도)
 -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보고서를 평가대상 시·군별로 작성(평가위원)
- ⑥ 6단계 :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팀별 순위 결정(평가심의위원회 및 전라북도)
 -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각 평가팀별로 순위를 결정함.

2) 평가방법 및 순위결정절차

- 첫째, 평가단 구성에 있어, 동일한 평가지표라 할지라도 평가위원에 따라 평가의 등급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대상 그룹별로 동일한 평가자가 동시에 평가하도록 함. 따라서 1차 평가의 경우 평가단을 ‘신규사업평가팀’과 ‘계속사업평가팀’의 2개의 평가팀을 구성함.
- 둘째, 각 평가팀의 평가위원 수는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짝수 보다는 홀수가 바람직하며, 평가지표의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5인 또는 7인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2개 평가팀이 동시에 평가할 것을 전체로 할 때, 10인 또는 14인 평가위원이 필요하며, 평가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또는 15인으로 구성함.
- 셋째, 평가위원장과 각 평가팀의 팀장으로 구성되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와 각 평가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
- 넷째, 각 평가팀별로 해당 시·군의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하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시·군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표준화점으로 변환하는 방법임. 따라서 평가실시 전 순위결정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6. 순위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 1차 평가에 있어 평가대상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순위지표의 총점은 46점임.
- 총점을 각 평가부문별로, 각 평가항목별로,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 부문이나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순위지표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다만 평가시점에 있어 평가주체(전라북도)의 판단에 의해 특정 평가지표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

IV. 정책제언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의 역할이 다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일회적 또는 단기적 평가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평가방법에 있어서 좀 더 지역밀착적인 평가방식이 필요하며, 평가결과보다 평가과정을 통해 도내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셋째,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평가지표의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컨설팅지표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2차 평가를 위해 개별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다섯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지역주민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되어야 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풀예산의 일부를 지역주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목 차

제 1 장 서론	3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 범위, 방법 및 체계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및 체계	5
제 2 장 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개념·사업개요·추진상황	9
제 1 절 사업의 개념 및 사업추진방향	9
1. 사업의 개념	9
2.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9
3. 사업의 선정절차	12
제 2 절 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개요 및 특성	13
1. 사업명 및 사업성격	13
2. 사업 내용 및 전라북도 주무부서	15
3. 사업기간 및 예상사업비 등	17
4. 도비 지원예산 운영계획	18
제 3 절 시·군 1프로젝트 추진상황	20
1. 시·군 전담 전문가의 배정	20
2. 마스터플랜 작성 등 사전절차이행	20
3. 도비 지원예산의 집행방침과 지원 실적	21
4. 시사점	22
제 3 장 시·군 1프로젝트사업의 평가지표개발	27
제 1 절 사례분석	27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계정 지역단위평가(2006)	27

2. 건설교통부,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선도사업 정책기반 및 도시대상 평가체제 구축(2007)	34
3. 과학기술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지침(2007)	48
4.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지침(2007)	54
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활력증진계획평가 세부계획(2007)	58
6. 농림부,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계획(2007)	68
제 2 절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73
1. 평가의 필요성·성격 및 목적	73
2. 평가의 주체 및 평가지표 개발의 기준	76
3. 평가대상의 그룹화	80
제 3 절 평가지표 개발	88
1. 기본방향	88
2. 기본구성	90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1
4. 평가지표별 개요 및 측정방법	105
5. 평가지표의 세부적 운용방안	125
6. 순위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130
제 4 장 운영방안 및 정책제언	135
제 1 절 평가절차	135
1. 기본방향	135
2. 단계별 방향	135
제 2 절 평가방법 및 순위결정 절차	138
1. 평가방법	138
2. 순위결정 절차	138
제 3 절 정책제언	139
참고문헌	141

표 목 차

<표 2-1>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방향	11
<표 2-2>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기 추진 일정	13
<표 2-3>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성격	14
<표 2-4>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내용 및 도 주무부서	16
<표 2-5>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기간 및 예상사업비	17
<표 2-6> 국가예산대상사업	18
<표 2-7> 도비 지원예산 운영계획	19
<표 2-8> 사전행정절차이행의 추진상황	21
<표 2-9> 도비 풀예산의 지원이 완료된 시·군	22
<표 3-1> 군특회계사업의 성격별 분류	27
<표 3-2> 생활기반정비 사업군	29
<표 3-3> 문화체육진흥 사업군	30
<표 3-4> 지역산업기반조성 사업군	31
<표 3-5> 지역SOC건설 사업군	32
<표 3-6> 낙후지역개발 사업군	33
<표 3-7> 기타 사업군	34
<표 3-8> 시범도시 공통항목 평가지표	39
<표 3-9> 시범도시 개별항목 평가지표	40
<표 3-10> 시범마을 공통항목 평가지표	43
<표 3-11> 시범도시 공통항목 평가지표의 평가배점	45
<표 3-12> 시범도시 개별항목 평가지표의 평가배점	46
<표 3-13> 시범마을 공통항목 평가지표의 평가배점	48
<표 3-14> 표준사업분류	49
<표 3-15> 성과목표·지표 설정사례	52
<표 3-16> 추진단계에 따른 가중치	52
<표 3-17> 평가의 등급	53
<표 3-18> 상위평가항목·지표 및 평가등급부여 방법	55
<표 3-19> 평가위원별 평가표	64
<표 3-20> 서면평가 집계표	66

<표 3-21> 시군별 평가항목 집계표	66
<표 3-22> 현장평가표	67
<표 3-23> 평가항목 및 배점표	71
<표 3-24>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지표의 선정기준	80
<표 3-25>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방안	81
<표 3-26> 사업내용에 따른 그룹화 방안	82
<표 3-27> 도의 주무부서에 따른 그룹화 방안	82
<표 3-28> 사업내용 및 도 주무부서를 고려한 그룹화 방안	83
<표 3-29> 사업성격에 따른 그룹화 방안	84
<표 3-30> 평가대상의 그룹화 방안별 대응전략	88
<표 3-31> 공통평가지표의 기본구성(예)	91
<표 3-32> 사업기획부분 평가항목·평가지표	94
<표 3-33> 사업집행부분 평가항목·평가지표	97
<표 3-34>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분 평가항목·평가지표	99
<표 3-35> 문화관광중심분야 평가를 위한 계량성과지표	100
<표 3-36> 문화관광중심분야 평가를 위한 비계량성과지표	102
<표 3-37> 산업육성중심사업군 성과지표 예시	103
<표 3-38> 산업육성중심사업 중 연구개발지원 관련 성과지표	104
<표 3-39> 산업육성중심사업 중 경영관리 관련 성과지표	104
<표 3-40> 사업기획부분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배점(안)	110
<표 3-41> 사업집행부분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배점(안)	118
<표 3-42>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분 측정방법 및 배점(안)	124
<표 3-44> 1차 평가에 시용할 평가지표별 성격	129
<표 3-45> 순위지표별 배점현황	13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체계도	6
<그림 2-1>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도출 및 조정 절차	12
<그림 2-2> 시·군별 사업명	14
<그림 3-1> 시범도시 사업의 평가지표별 평가배점	44
<그림 3-2> 시범마을 사업의 평가지표별 평가배점	47
<그림 3-3> 평가절차도	55
<그림 3-4> 평가위원회 구성도	59
<그림 3-5> 사업평가 및 집행 모니터링 절차	74
<그림 3-6>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	92
<그림 4-1> 평가절차도	137

제 1 장

JDI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 방법 및 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역특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지역성장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구상되었으며, 선도적인 모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도내 지역발전정책 및 특성화 전략 등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는 도와 시·군 간의 균형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발전을 위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시·군 간의 정책협의를 통해 각 지역별 핵심 성장 사업 및 특성화 전략 사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지역특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이 보유한 특성화 자원을 활용하여 비전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시도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新지역발전 정책 중 지역협력 정책과 연결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 광역-기초 간 지역성장 균형발전 협력모델로 성공 가능성이 높음.
- 전라북도의 각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자립과 운영을 가능케 하는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등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이러한 일련의 정책 활동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및 정책추진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환류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조원으로 예상되며, 전라북도는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배분방식이 균등배분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 결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쟁 분위기 조성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단기적인 사업의 성격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성과 및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해지고 있어 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는 사업 유형 및 추진단계 등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여 이뤄지며, 지표 개발은 단일의 대안이 아닌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여 전라북도가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제시함.
 - 특히, 평가지표 개발 시 관련 전문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자체평가를 통해 향후 평가수행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함.

제 2 절 연구 범위, 방법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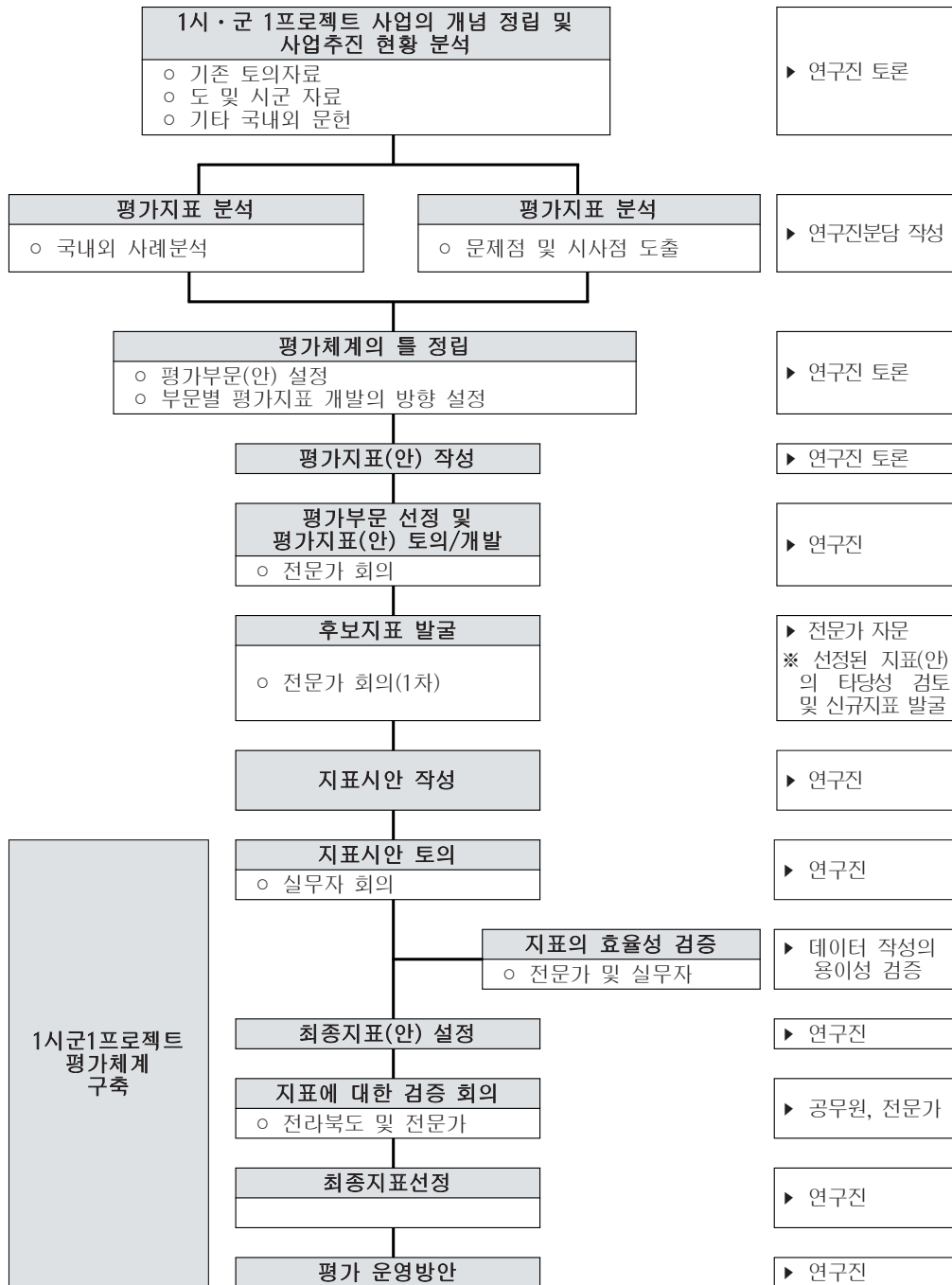
1.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의해 결정된 전라북도 전역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을 평가하여 도와 시·군이 합의하여 결정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으로 지역발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과업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에 대한 적합성 및 당위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함.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내용 및 현황 분석임. 시·군에서 선정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진과정, 구체적인 계획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할 것임.
 - 둘째,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것임. 이러한 사업의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 평가지표 사례를 검토하며, 도출된 평가기준 및 지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의 지표설정 방향과 원칙을 도출하고 실제 평가지표를 설정함.
 - 셋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지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것임. 도출된 평가지표의 추진 및 운영 과정을 작성하고 사후추진방향 등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체계

- 본 연구의 기본은 문헌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연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연구내용의 정확성과 우수성을 확보하고자 함.
-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사례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평가기준 및 지표의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자문회의를 통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평가지표와 지표별 배점을 설정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1시·군 1프로젝트 실무진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함.



<그림 1-1> 연구체계도

제 2 장

JDI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개념·사업개요·추진상황

- 제 1 절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의 개념 및 사업추진방향
- 제 2 절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의 개요 및 특성
- 제 3 절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상황

제 2 장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개념·사업개요·추진상황

제 1 절 사업의 개념 및 사업추진방향

1. 사업의 개념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한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협력발전 전략을 의미함.

2.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지역성장 및 특성화 추진에 필요한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사업 중 지역의 핵심성장사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프로젝트마다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전북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도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협력마인드 구축에 노력하여 전국 최초 광역-기초 간 지역성장 프로젝트의 선도모델로 설정하였고, 도와 시·군이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재원 확보, 국내 외 우수기업 및 민간 자본유치, 행정적 절차이행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지역성장 산업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확대함.

- 관련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활기찬 거주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
- 지역특성화 전략과 연계하여 인프라를 구축함.
 - 지역의 경제활동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여 거주 안정성을 확보함.
 - 지역성장 전략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설설치를 유도하고 시설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성장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함.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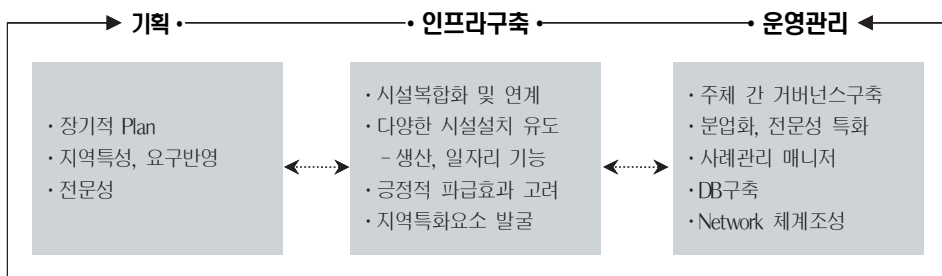
-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델사업의 선정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특성에 따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등을 선정하여 시·군과 도의 관련부서의 사업연계 등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자립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기반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향함.
- 전라북도 부서 간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도내 시·군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산업 및 개발사업 등을 전라북도 각 부서와 상호 연계시키고, 지역정착 및 일자리 제공과 병행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함.
 - 지역특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관계부서 지원 및 협조를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의 이익을 지역발전 구축,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의 대안을 제시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산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선도적 사업추진을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 실행평가를 통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모델을 구축함.

- 전라북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군의 자발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전라북도와와의 공동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관리를 추진함.
 -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동책임 하에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개선 및 환류를 도모함.

<표 2-1>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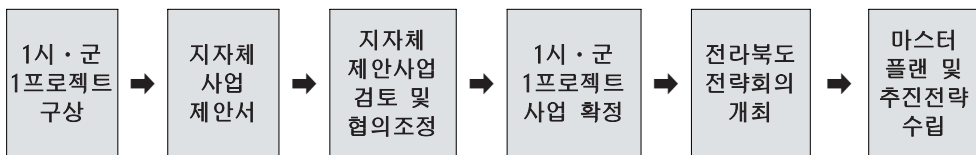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발굴**
 - 단기적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인프라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이 바람직
 - 지역의 고유자원(전통산업, 관광자원, 특산물) 및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 시설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 모색



- **다양해진 지역 수요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 지역사회의 수요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제공
 -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 체계 및 인프라 구축
- **선진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참여**
 - 지자체~전라북도 등 주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운영 체계 확립
 -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 유도
- **시설복합화와 다양한 연계를 통한 통합 인프라 구축**
 - 특성과 사업을 통한 거주지역 내에서 관련 시설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추구
 - 행정체계 및 기존 자원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 전달체계 및 사업 추진 체계 마련

3. 사업의 선정절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선정은 지역수요 및 현황, 지자체 실행의지, 제도적 실행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 제안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전라북도 각 부서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지원방안을 모색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발굴 및 보완을 위해 기존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괄하여 지자체 세부사업을 조정하고 세부사업별 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함.



<그림 2-1>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도출 및 조정 절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선정 시 지역발전에 적합한 사업과 지역특화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조정하여 실행가능성을 검토한 후 선정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세부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중앙정부의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추진함.
- 전라북도 전략회의를 통해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전라북도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함.
-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단위사업들을 통합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전북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며, 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업은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투·융자와 예비타당성 등 절차이행 후 도비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표 2-2>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기 추진 일정

•시·군별 사업선정 및 협의	: '07. 7월
•사업선정 결과발표(민선 1주년 전북 Agenda12 발표 시)	: '07. 8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결정(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 '07. 10. 3
•시·군 전략산업 파악 및 지원 요청사업 수렴	: '08. 1
- 도지사, 14개 시·군 전략산업보고회를 통해 지원요청사업 수렴	
•추진성과 도출을 위해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08. 3~
- 사업별 연구원(전발연) 지정·자문 추진, 현장방문 간담회 추진, 부단체장 쟁점토론회 개최 등	
•각 프로젝트 진행속도에 맞춰 도비 풀예산 지원 중	: '08. 4~

제 2 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개요 및 특성

1. 사업명 및 사업성격

- 사업의 선정절차를 거쳐 14개 시·군에서 정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이름은 <표 2-3>과 같음.
- 14개 사업은 시행주체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사업(6개 사업)과 군이 시행하는 사업(8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행주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에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표 2-3> 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성격

시·군	사업명	사업성격
전주시	전통문화도시조성	계속사업
군산시	근대화도시조성	신규사업
익산시	식품전용산업단지조성	신규사업
정읍시	방사선융합기술(RFT)산업밸리조성	계속사업
남원시	연수관광지조성	신규사업
김제시	첨단농기계클러스터조성	신규사업
완주군	테크노밸리(제2산단)조성	신규사업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조성	계속사업
무주군	태권도공원조성	계속사업
장수군	말산업클러스터조성	계속사업
임실군	치즈산업밸리조성	계속사업
순창군	장류산업밸리조성	계속사업
고창군	복분자클러스터조성	계속사업
부안군	총병 프로젝트	계속사업



<그림 2-2> 시·군별 사업명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추진 중인 사업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정한 경우(이하 ‘계속사업’이라 함)와 새로운 사업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정한 경우(이하 ‘신규사업’이라 함)로 나눌 수 있음.
- 14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군산시 등 5개 사업이며, 계속사업은 전주시 등 9개 사업임.
-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사업의 준비상태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2. 사업 내용 및 전라북도 주무부서

- 1시·군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으며, 경관조성, 관광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연구소 설립 등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14개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문화관광중심사업’과 ‘산업육성중심사업’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음.
- 한편 도에서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주무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바,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의 사업은 전략사업국이, 그리고 익산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국이 주무부서임(장수군의 말산업클러스터는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에서는 승마레저타운조성으로 추진할 것임. 따라서 주무부서의 변경이 예상됨).

<표 2-4>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내용 및 도 주무부서

시·군	사업명	사업내용	도 주무부서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건립 한옥마을 경관조성 등 5개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문화재 매입·정비 군산시립박물관 및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근대역사경관조성, 해상매립지 자연생태공원 등 7개 사업 	"
익산시	식품전용 산업단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 쌀,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생산자-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농림수산식품국
정읍시	방사선융합기술산업밸리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과하산업단지 조성 AEA지정 RT국제협력센터 RT실용화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 	전략사업국
남원시	연수관광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형, 복합리조트형, 개별형 연수단지 조성 등 	문화체육관광국
김제시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적화단지 조성 기술혁신센터 구축 인력양성 및 기업유지 	전략사업국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단)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크노밸리단지 조성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설립 부품소재직접화사업 4개 사업 	"
진안군	홍삼·한방 클러스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삼연구소 및 한방약초센터 건립 홍삼·한방 농공단지 및 홍삼한방타운 조성 용담호주변 약용버섯단지 조성 등 9개 사업 	농림수산식품국
무주군	태권도공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권도공원 조성 	문화체육관광국
장수군	말산업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주마 육성목장 및 국제승마장 조성 마사고 육성 승마레저타운 조성 등 7개 사업 	농림수산식품국
임실군	치즈산업밸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즈과학연구소 건립 및 치즈피아 조성 낙농 클러스터, 유가공산업기지 구축 임실치즈체험테마파크 조성 등 6개 사업 	"
순창군	장류산업밸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및 제2 생산단지 조성 발효식품 HACCP전용공장 건립 전통절임류 세계회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사업 	"
고창군	복분자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분자관광발리지 조성 FTA과수산업 육성 복분자테마파크 조성 등 5개 사업 	"
부안군	총병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에타운 조성 뽕연구소 육성사업 전문식품기업 유치 등 7개 사업 	"

3. 사업기간 및 예상 사업비 등

- 1시·군 1프로젝트의 총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임.
- 사업기간 중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3조2,591억 원(100.0%)이며, 국비 8,775억 원 (26.9%), 지방비 5,466억 원(16.8%), 민자 1조8,350억 원(56.3%)이 투자될 예정으
로서 사업비 가운데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 그러나 전주
와 군산시의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사업이 추진됨.
- 사업별 예상 사업비는 태권도공원조성이 6,159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임실, 고창,
부안 등 3개 프로젝트가 600억 원대로 구성됨.

<표 2-5>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기간 및 예상사업비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14개 프로젝트	-	32,591	8,775	5,466	18,350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06~'12	1,025	390	635	-
군산근대문화도시조성	'09~'20	1,755	802	953	-
익산식품전용산업단지조성	'08~'12	3,574	-	74	3,500
정읍방사선융합기술(RFT)산업밸리조성	'06~'15	3,198	1,149	192	1,857
남원연수관광지조성	'07~'17	3,921	290	600	3,031
김제첨단농기계클러스터조성	'08~'12	885	152	153	580
완주테크노밸리(제2산단)조성	'05~'12	5,868	1,857	452	3,559
진안홍삼·한방 클러스터조성	'06~'11	757	240	362	155
무주태권도공원조성	'05~'13	6,159	2,044	291	3,824
장수말산업클러스터조성	'06~'12	2,054	392	602	1,060
임실치즈산업밸리조성	'04~'10	652	331	263	58
순창장류산업밸리조성	'07~'13	1,389	773	383	233
고창복분자클러스터조성	'05~'12	671	181	273	217
총병프로젝트	'06~'12	683	174	233	276

- 한편 14개 사업 가운데 국가예산대상사업은 2008년도의 경우 10개 사업이며, 2009년도에는 김제시의 첨단농기계클러스터조성사업이 포함되어 11개 사업임. 구체적인 국가예산대상사업은 <표 2-6>과 같음.

<표 2-6> 국가예산대상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가예산		2009년도 대상사업
		2008	2009	
계		470.2	944	-
'09년도 대상 : 10개	-	-	-	-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1,025	30	70	한스타일진흥원 건립(35)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건립(20) 등
군산근대문화도시조성	1,755	18	41	근대문화재 매입(6), 지방테마과학관(5), 문화공간벨트(10), 근대역사경관조성(20)
정읍방사선융합기술 산업밸리조성	1,755	133	133	대전류사이클로트론종합시험동건립 (68), IAEA지정RT국제협력센터건립(17) 등
김제첨단농기계 클러스터조성	885	-	94	IT융합 첨단농기계 종합기술지원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조성	5,868	50	244	한국복합소재기술연구소
진안홍삼·한방 클러스터조성	757	36.2	52	홍삼한방농공단지조성(46) 등
무주태권도공원조성	6,159	36	53	태권도공원 조성
임실치즈산업밸리조성	652	29	101	유가공기지구축(32), 임실치즈체험테마파크(30) 등
순창장류 산업밸리조성	1,389	80	121	발표미생물종합활용센터, 2단계 RIS 사업(10) 등
고창복분자 클러스터조성	790	76	76	복분자 관광밸리조성(10), FTA과수 산업육성(9), 신활력지역지원(24) 등
부안충병프로젝트	683	45	20	누에타운조성, 전문기업투자유치 등

4. 도비 지원예산 운영계획

- 전라북도는 1시군 1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별로 10억 원을 균등 배분하여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균등 배분된 10억 원('도비 풀예산'이라 함)은 사업의 성격과 내용, 단계 등에 따라 시·군이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활용되도록 하고 있음.
- 각 시·군별 도비 지원예산의 운영계획은 <표 2-7>과 같으며, 인프라 구축 및 부지 매입, 용역사업 등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임.
- 또한, 도비 지원이 완료된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음.

<표 2-7> 도비 지원예산 운영계획

시·군	지원시기 (도⇒시군)	세부사업	시·군 요청사업
전주시	08. 9.	한스타일진흥원건립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부지매입비, 시설비, 골목길 및 담장정비, 지중화 사업(사업 일부)
익산시	08. 11 (예정)	식품전용산업단지조성	타당성용역, 쌀, 고구마 등 가공식품 개발, 식품기업유치 및 홍보마케팅
정읍시	08. 4.	연구원정주공간조성사업	기반조성사업비
남원시	08. 5.	연수관광지조성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 및 관광지 조성 투자활동
김제시	08. 5.	첨단농기계클러스터조성	토지매입비, 용역비
완주군	08. 11 (예정)	테크노밸리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진안군	08. 4.	홍삼한방농공단지조성 홍삼연구소 건립	토지매입비, 연구소건립
무주군	08. 11 (예정)	태권도공원조성	공원부지 토지매입
장수군	08. 9.	승마레저타운조성	토지매입비
임실군	08. 11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 기지구축
순창군	08. 6.	바표미생물종합활용센터	HACCP플랜트 및 생산장비 구축
고창군	08. 9.	복분자테마파크부지조성	부지매입비
부안군	08. 11 (예정)	총병프로젝트	누에타운조성, 오디산지수매유통시설

제 3 절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상황

1. 시·군 전담 전문가의 배정

- 전라북도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군-전문가의 3각 협력체제의 유지를 위해 각 시·군별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고, 이의 시행을 각 시·군에 전달하였음.
- 따라서 현재 전북발전연구원 소속의 1명의 전문가가 1개 시·군을 전담하여 자문에 응하고 있음.

2. 마스터플랜 작성 등 사전절차 이행

- 전라북도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2008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촉구하였음.
 -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전라북도는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실시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시·군에게 요구한 사전 행정절차의 추진상황은 <표 2-8>과 같음.
- 마스터플랜에 있어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에 따라 이행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표 2-8> 사전행정절차이행의 추진상황

구 분	시·군	마스터플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융자	비 고
계속사업	전주시	수립완료	반영	실시	* 투융자, 단위사업별 실시
	순창군	수립완료	"	"	
	임실군	수립완료	"	"	
	고창군	수립완료	"	"	
	무주군	수립완료	"	"	
	정읍시	추진중	"	"	
	장수시	추진중	"	"	
	진안군	추진중	"	"	
	부안군	수립계획	"	"	
신규사업	남원시	수립완료	"	"	
	완주시	추진중	"	"	
	익산시	추진중	"	"	
	김제시	추진중	"	"	
	군산시	수정계획	"	"	

3. 도비 지원예산의 집행방침과 지원 실적

- 전라북도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도비 풀예산의 지원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첫째,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선행 사업에 지원함.
 - 둘째, 시·군의 재원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이 충실한 시·군에 우선 배분함.

- 현재 도비 풀예산의 지원이 완료된 시·군은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순창군 등 8개 시·군임(다음 <표 2-9> 참조).

<표 2-9> 도비 풀예산의 지원이 완료된 시·군

사 업 명	집행시기	세부 지원사업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조성	’08. 4.	농공단지 조성, 홍삼연구소 건립
정읍방사선융합기술산업밸리조성	’08. 4.	연구원 정주공간조성사업
남원연수관광지조성	’08. 5.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연수조성사업 투자설명회 지원
김제첨단농기계클러스터구축	’08. 5.	용역비, 토지매입비
순창장류산업밸리조성	’08. 6.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HACCP플랜트 장비구축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08. 9.	한옥마을 경관조성, 한스타일진흥원
장수말산업클러스터조성	’08. 9.	부지매입비
고창복분자클러스터조성	’08. 9.	부지매입비(복분자테마파크조성)

4. 시사점

-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재원투자계획, 단위사업의 추진경과, 행정절차 추진 상황들을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지역이 사업의 초기단계 중이며, 사업추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함.
- 각 시·군의 사업은 도와 시·군 간에 협의와 합리적 선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에 있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나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시작단계이므로 이번 1차 평가에서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내용상 크게 문화관광중심사업과 산업육성중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도의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점도 평가의 책임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격, 즉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그리고 계속사업 가운데에서도 신활력지원사업 등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나 마스터플랜작성 등의 지원을 받아 온 사업이나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진행정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성격의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군 간의 협력체제강화를 위해 도·시·군 간의 정책협의 내용 및 지침에 대한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평가가 평가지표개발에 있어 주요한 항목이 되어야 할 것임.
 - 시·군 전담 전문가의 활용정도
 - 마스터플랜의 수립여부
 - 사전절차 이행의 정도 등

제 3 장

JDI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평가지표개발

- 제 1 절 사례분석
- 제 2 절 평가지표개발의 기본방향
- 제 3 절 평가지표 개발

제 3 장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의 평가지표개발

제 1 절 사례분석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계정 지역단위평가(2006)

1) 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3조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함.
- 평가대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05년에 각 지자체가 균특회계로 수행한 사업임.
 - 사업은 성격별로 6개 분야로 분류됨(이하 <표 3-1> 참조).

<표 3-1> 균특회계사업의 성격별 분류

분야	분 류 기 준
생활기반정비사업	○ 개발 제한구역관리, 연안정비, 식수원 개발 등 보다 나은 생활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
문화·체육·관광 진흥사업	○ 체육시설(운동장, 야구장) 및 문화시설(음악당, 비엔날레 등) 건립·조성과 관련된 사업 ○ 시·도별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역산업기반조성	○ 유통센터 건설, 경지정리 등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업
지역SOC개발사업	○ 지방도로·진입도로 건설, 배수개선시설 건설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SOC 구축과 관련된 사업
낙후지역개발	○ 도서종합개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오지개발 등 낙후된 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업
기타 사업	○ 수해상습지역개선,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재해방재 및 기타 목적과 관련된 사업

2) 평가의 기본방향

- 지역발전 목표와의 부합성, 재원조달의 합리성을 위주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함.
 - 지역발전 목표 및 지역수요를 고려할 때 사업의 시급성과 목표달성에 대한 사업의 기여가능성 등을 평가
 -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규모의 적정성,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재원구성의 적절성을 평가

- 사업구성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함.
 - 지역개발사업 전체를 고려할 때 주요사업의 투자규모 및 사업목적별 투자배분의 적정성을 검토
 - 사업기획, 집행, 성과 및 사업구성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업/부진사업을 명시

- 지역밀착형 평가를 통해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지역별 분석보고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평가의 엄밀성을 제고
 - 시·도 사업설명회 개최 및 토론을 통해 평가결과의 수렴성을 높이고 지역/지자체 의견과의 정합성을 확보

3) 평가지표

① 특성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취지에 맞춰 지자체 발전목표에 따른 사업의 유기적 연관성 및 효과성을 평가함.
- 지역단위 발전과 관련이 깊은 사회, 경제, 환경지표와 지역단위 사업평가 결과지표를 연계함.
- 기획, 집행, 결과 등 사업 전주기적 관점에서 평가지표를 설정함.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추진목적별로 결과지표를 설정함(<표 3-2>, <표 3-3>, <표 3-4>, <표 3-5>, <표 3-6>, <표 3-7> 참조).

② 사업군별 평가지표

<표 3-2> 생활기반정비 사업군

평가지표	가중치(100)			착안사항
	신규	계속	종료	
1. 사업기획	40	20	10	
○ 추진근거의 타당성	20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절성 · 상위목표 및 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20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절성
2. 사업집행	40	30	20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20	15	10	· 사업내용 대비 수행체계, 수행방식의 적절성
○ 자원조달의 합리성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규모의 적정성 · 사업내용 대비 자원 구성의 적절성
3. 사업결과	20	50	70	
○ 계획대비 추진실적	10	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척율 · 예산집행율
○ 생활환경 수준 제고 효과	5	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수질오염도 개선 · 주택만족도 증가 · (1인당)상수도 급수율(생활/산업/농업) · (1인당)하수도 급수율 · 1인당 급수량 · 주민만족도 등
○ 사업결과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5	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만족도 등 ※ 관련 착안사항별 사업의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조정사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 자체평가의견과 향후 조치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표 3-3> 문화체육진흥 사업군

평가지표	가중치(100)			착안사항
	신규	계속	종료	
1. 사업기획	40	20	10	
○ 추진근거의 타당성	20	10	5	·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절성 · 상위목표 및 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20	10	5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절성
2. 사업집행	40	30	20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20	15	10	· 사업내용 대비 수행체계, 수행방식의 적절성
○ 자원조달의 합리성	20	15	10	·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규모의 적정성 · 사업내용 대비 자원 구성의 적절성
3. 사업결과	20	50	70	
○ 계획대비 추진실적	10	20	20	· 사업진척율 · 예산집행율
○ 지역문화체육/관광 진흥 효과	5	15	25	· (1인당)시설수 (이용횟수, 방문자수) · 지역수입 증대 · 고용창출효과
○ 사업결과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5	15	25	· (1인당) 공원면적 증대 · 방문자(참여자)만족도 ※ 관련 착안사항별 사업의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조정사항	±10			·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 자체평가의견과 향후 조치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표 3-4> 지역산업기반조성 사업군

평가지표	가중치(100)			착안사항
	신규	계속	종료	
1. 사업기획	40	20	10	
o 추진근거의 타당성	20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절성 · 상위목표 및 계획과의 부합성
o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20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절성
2. 사업집행	40	30	20	
o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대비 수행체계, 수행방식의 적절성
o 자원조달의 합리성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규모의 적정성 · 사업내용 대비 자원 구성의 적절성
3. 사업결과	20	50	70	
o 계획대비 추진 실적	10	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척율 · 예산집행율
o 지역산업진흥 효과	5	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성장 · 일자리창출 지원 · (1인당)기반시설/센터수(이용자수) · 지방공단/농공단 면적/입주기업수 /종업원수/가동률
o 사업결과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5	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농지당) 농업생산량 · (1인당·톤당) 어획량 · 농어업 소득 증대 · 이용자만족도 등 ※ 관련 착안사항별 사업의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조정사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 자체평가의견과 향후 조치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표 3-5> 지역SOC건설 사업군

평가지표	가중치(100)			착안사항
	신규	계속	종료	
1. 사업기획	40	20	10	
o 추진근거의 타당성	20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절성 · 상위목표 및 계획과의 부합성
o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20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절성
2. 사업집행	40	30	20	
o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대비 수행체계, 수행방식의 적절성
o 재원조달의 합리성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규모의 적정성 · 사업내용 대비 재원 구성의 적절성
3. 사업결과	20	50	70	
o 계획대비 추진실적	10	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척율 · 예산집행율
o 지역SOC 활용도 제고 효과	5	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생산성 향상 · 고용창출효과 · (1인당)지방도/시군도연장, 도로포장율 · (1인당)상수도 급수율(생활/산업/농업) · (1인당)하수도 급수율 · 주민만족도 등 ※ 관련 착안사항별 사업의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o 사업결과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5	15	25	
조정사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 자체평가의견과 향후 조치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표 3-6> 낙후지역개발 사업군

평가지표	가중치(100)			착안사항
	신규	계속	종료	
1. 사업기획	40	20	10	
o 추진근거의 타당성	20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절성 · 상위목표 및 계획과의 부합성
o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20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절성
2. 사업집행	40	30	20	
o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20	15	10	· 사업내용 대비 수행체계, 수행방식의 적절성
o 재원조달의 합리성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규모의 적정성 · 사업내용 대비 재원 구성의 적절성
3. 사업결과	20	50	70	
o 계획대비 추진실적	10	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척율 · 예산집행율
<낙후지역개발> o 삶의질 향상 효과	5	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만족도 증가 · (1인당)상수도 급수율(생활/산업/농업) · (1인당)하수도 급수율 · 1인당 급수량 · (1인당) 시설수 (이용횟수, 방문자수) · 지역수입 증대 · 고용창출효과 · (1인당) 공원면적 증대 · 농어업생산성 향상 · (1인당)지방도/시군도연장, 도로포장율 · (가구당) 자연재해피해액(건수) 감소 · 방문자(참여자), 주민만족도 ※ 관련 착안사항별 사업의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o 사업결과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5	1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 자체평가의견과 향후 조치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조정사항	±10			

<표 3-7> 기타 사업군

평가지표	가중치(100)			착안사항
	신규	계속	종료	
1. 사업기획	40	20	10	
o 추진근거의 타당성	20	10	5	·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절성 · 상위목표 및 계획과의 부합성
o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20	10	5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절성
2. 사업집행	40	30	20	
o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20	15	10	· 사업내용 대비 수행체계, 수행방식의 적절성
o 재원조달의 합리성	20	15	10	·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규모의 적정성 · 사업내용 대비 재원 구성의 적절성
3. 사업결과	20	50	70	
o 계획대비 추진실적	10	20	20	· 사업진척율 · 예산집행율
<기타사업> o 재해예방 및 개발 제한구역 관리 효과	5	15	25	· (가구당) 자연재해피해액(건수) 감소 · 주민만족도 등 ※ 관련 착안사항별 사업의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o 사업결과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5	15	25	
조정사항	±10			·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 자체평가의견과 향후 조치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2. 건설교통부,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선도사업 정책기반 및 도시대상 평가체제 구축(2007)

1) 개요

(1) 평가지표구성의 기본방향

- 주거, 의료, 복지, 안전, 교통 등 기초적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삶터 가꾸기로서의 마을공동체 구현을 지향한 평가지표

- 교육, 일자리 등 배우고 익히고 일할 수 있어 마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활기차고 활력 있는 일터 가꾸기로서의 마을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평가지표
- 환경, 경관, 문화·정보 등 마을의 다양한 환경·문화자원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면서 아름답고 개성 있는 놀이터 가꾸기로서의 마을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평가지표

(2) 평가지표구성의 기본원칙

- 평가분야 및 항목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지표
- 평가분야 및 항목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된 지표
- 평가분야 및 항목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신뢰성이 담보된 지표

2) 평가지표의 개요 및 구성

(1) 평가지표의 개요

-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실제 도시 및 마을단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어야 함.
- 시범사업의 서면평가는 사업대상의 특성상, 마을부문과 도시부문의 평가지표를 달리 설정하여 평가함
 - 시범도시사업에서는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을 주요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공통항목평가, 현지심사와 함께 특화발전유형에 대한 개별항목 평가를 실시함.
 - 시범마을사업에서는 주민참여의 생활환경 개선을 주요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부분을 강조한 공통항목평가만을 실시함.

- 공통항목 평가지표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지표로, 시범사업으로서 시범도시 및 시범마을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과 상황이 고려되어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 개별항목 평가지표는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개별지표로, 사업의 가치 지향적 측면과 지역의 현실적 상황과 여건이 반영되어 해당 지자체별로 특성화 및 선진화된 시범도시 및 시범마을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2) 평가지표의 구성

- 시범사업의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심사를 통해 진행됨. 서면평가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의 특성상, 도시부문과 마을부문의 평가지표를 달리 설정함.
- 시범도시사업에서는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을 주요하게 추진하기에, 공통항목평가와 함께 특화발전유형에 대한 개별항목평가를 실시함.
- 시범마을사업에서는 특화발전보다 주민참여와 화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기에, 주민참여·주민협력을 평가하는 공통항목평가를 실시함.
- 이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은 서면평가에서 공통항목평가와 개별항목평가를, 시범마을사업은 공통항목평가를 실시하며, 이들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단위별 평가지표를 구분함

3) 시범도시 평가지표

- 공통항목평가는 시범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지표로, 계획의 합목적성,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부문별 평가지표로 구성됨.
- 개별항목평가는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개별지표로, 사업의 가치 지향적 측면과 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평가하고자 함.
- 개별항목 평가지표는 시범사업의 유형 10가지에 따라 부문별로 다르게 구성됨.

(1) 공통항목 평가지표

- ① 합목적성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
 - 사업목표와 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의 부합성
 - 시설계획 및 프로그램 계획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를 평가
 - 지역특성 반영여부(특화전략 적합성)
 - 사업내용이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반영·강화하고 있는가를 평가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상위·도시기본계획 등)
 - 사업목표가 도·광역시 등의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있는가를 평가
- ②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및 사회의 참여·협력노력을 평가
 - 지역사회의 참여정도
 - 사업과정에서 주민·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역할분담이 고려되었는가를 평가
 - 참여프로그램의 적절성
 - 지역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는가, 그 내

용이 적절한가를 평가

- 지자체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 사업진행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가, 추진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

③ 실현가능성 :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

- 사업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 사업규모와 사업 추진계획 등이 사업기간 동안 실현될 수 있는가를 평가
-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사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를 평가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

④ 기대효과 : 사업의 진행·완료가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 사업의 공헌도
 - 사업 실행으로 지역특화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를 평가
- 사업의 시급성
 - 사업이 시급한 곳에 시행됨으로써, 그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평가
- 사업의 파급성
 - 사업의 시행·완성이 지역특화발전의 확산 및 성숙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

<표 3-8> 시범도시 공통항목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합목적성	사업목표와 시설 및 프로그램 내용의 부합성
	지역특성 반영여부(특화전략 적합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상위·도시기본계획 등)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정도
	참여프로그램의 적절성
	지자체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실현 가능성	사업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의지
기대효과	사업의 공헌도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파급성

(2) 개별항목 평가지표

※ 시범도시의 개별항목 평가지표는 시범도시의 유형(10가지 유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써 본 과업의 내용과는 무관하여 생략함. 다만 시범도시의 개별항목 평가지표만 소개함.

<표 3-9> 시범도시 개별항목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①생태·환경형	자연성의 복원·창출, 환경오염 저감 효과
	자연 생태계의 자원순환을 고려한 조성 노력
	자연생태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②경관·미관형	시각적 아름다움의 제고 효과
	지역의 경관자원 활용·창출 효과
	주변환경과의 어울림
③건축문화형	지역 건축자원(역사자원, 문화자원, 자연자원 등)의 활용·창출
	지역고유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 정도
	조형물의 예술성
④역사문화형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확보 효과
	지역의 독특한 역사, 예술자원의 확충 효과
	역사·문화보전, 정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⑤정보·과학형	정보·과학 단지시설의 입지특성 및 지역의 역량
	정보·과학 콘텐츠의 우수성
	지역기관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력 정도
⑥녹색교통형	보행자·자전거 등 대중지향적 교통체계 구축 정도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정도
	편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교통체계의 부합성
⑦관광·레저형	지역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의 역량
	독특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차별화 전략의 적절성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⑧방재·안전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도시재난 및 안전관리 효과 정도
	재해 및 범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⑨교육학습형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성
	기존 교육학습시설(교육·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등) 및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성
	지역 교육자원의 창출 효과
⑩도시정비형	불량한 환경의 개선 정도
	생활 및 편익시설의 공급 정도
	개성 있고 특색있는 공간(시설)제공 정도

4) 시범마을 평가지표

- 시범마을사업의 서면평가는 공통항목평가로 진행됨
 - 시범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라는 사업특성상, 특성화 사업인 개별항목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시범마을사업은 합목적성,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함
 - 시범마을의 평가지표는 마을단위 사업의 특성상,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 같은 지표는 설정하지 않고,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함

(1) 공통항목 평가지표

① 합목적성

- 사업목표와 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의 부합성
 - 시설계획 및 프로그램 계획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를 평가
- 사업주체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주체의 역할분담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를 평가

②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 계획 및 사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 사업계획 및 진행에서 주민을 비롯한 마을구성원이 어느 정도 참여 하는가를 평가
-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 다양한 연령, 계층의 마을 구성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를 평가

- 다양한 마을 구성원, 지자체 등과의 협력계획
 - 사업시행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뿐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단체 (예: 상인연합회 등)와 협력하고자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를 평가

③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협의회의 역량
 -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 또는 주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
- 사업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 사업규모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이 실현 가능하게 수립되었는가를 평가
-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사용 계획이 사업의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를 평가

④ 기대효과

- 사업의 시급성
 - 사업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또는 다른 지역(마을)과의 비교선상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가를 평가
- 사업의 공헌도
 - 사업완성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

<표 3-10> 시범마을 공통항목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합목적성	사업목표와 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의 부합성
	사업주체 역할분담의 적정성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계획 및 사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다양한 마을 구성원, 지자체 등과의 협력계획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협의회의 역량
	사업 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공헌도

5) 평가방안

(1) 평가기준

- 시범사업의 평가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통해 진행됨. 서면 및 현지심사는 마을단위와 도시단위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최종 서면평가와 현지심사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뤄짐.
- 서면평가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이뤄짐.
- 현지심사는 평가위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서면심사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 즉 자료의 사실성 확인, 현장과 추진사업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임.

- 현지심사는 서면심사에서 통과한 2배수의 예비 통과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평가위원회는 현지심사 시 해당사업지원 주체에 현장심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평가배점

- 시범사업의 선정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지심사를 통해 진행되고, 서면평가에서 사업대상을 2배로 압축한 후 현지심사를 실시하여 나온 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 서면평가에서는 사업대상의 특성상, 도시부문과 마을부문의 평가지표 및 배점을 달리 설정함.

① 시범도시의 평가배점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단위 사업에서는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을 주요하게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특화발전유형에 대한 개별항목 평가배점이 부여됨.
- 도시단위사업의 평가는 공통항목평가, 개별평가, 현지심사를 통해 진행되고, 공통항목평가의 점수 50점, 개별평가 점수 30점, 현지심사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됨.

평가총점 (100점)	=	공통항목평가 (50점)	+	개별항목평가 (30점)	+	현지심사 (20점)
----------------	---	-----------------	---	-----------------	---	---------------

<그림 3-1> 시범도시 사업의 평가지표별 평가배점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단위 사업의 공통항목평가는 ‘시범도시’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지역 특화전략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계획 부문에 배점을 높여 평가함
- 도시단위사업의 평가배점은 ① 합목적성, ②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③ 실현가능성, ④ 기대효과 4개 부문별로 차등 배점을 두어 총 50점으로 이뤄짐(아래 <표 3-11> 참조).

<표 3-11> 시범도시 공통항목 평가지표의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총점
합목적성	사업목표와 시설 및 프로그램 내용의 부합성	5	13
	지역특성 반영여부(특화전략 적합성)	5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상위·도시기본계획 등)	3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정도	5	15
	참여프로그램의 적절성	5	
	지자체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5	
실현 가능성	사업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4	12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의지	4	
기대효과	사업의 공헌도	4	10
	사업의 시급성	3	
	사업의 파급성	3	

- 도시단위 사업의 개별항목 평가는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개별지표로 사업의 가치 지향적 측면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함.
- 개별항목의 평가지표는 ① 생태·환경형, ② 경관·미관형, ③ 건축문화형, ④ 역사문화형, ⑤ 정보·과학형, ⑥ 녹색교통형, ⑦ 관광·레저형, ⑧ 방재·안전형, ⑨ 교육학습형, ⑩ 도시정비형 등의 총 10개 부문별로 각각 10점씩 30점으로 이뤄짐(<표 3-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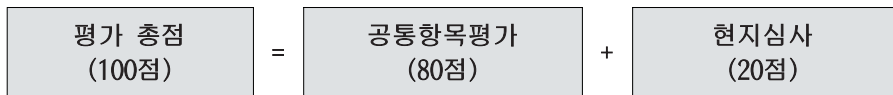
<표 3-12> 시범도시 개별항목 평가지표의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총점
생태·환경형 ①	자연성의 복원·창출, 환경오염 저감 효과	10	30
	자연 생태계의 자원순환을 고려한 조성 노력	10	
	자연생태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10	
경관·미관형 ②	시각적 아름다움의 제고 효과	10	30
	지역의 경관자원 활용·창출 효과	10	
	주변환경과의 어울림	10	
건축문화형 ③	지역 건축자원(역사자원, 문화자원, 자연자원 등)의 활용·창출	10	30
	지역고유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 정도	10	
	조형물의 예술성	10	
역사문화형 ④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확보 효과	10	30
	지역의 독특한 역사, 예술자원의 확충 효과	10	
	역사·문화보전, 정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10	
정보·과학형 ⑤	정보·과학 단지시설의 입지특성 및 지역의 역량	10	30
	정보·과학 콘텐츠의 우수성	10	
	지역기관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력 정도	10	
녹색교통형 ⑥	보행자·자전거 등 대중지향적 교통체계 구축 정도	10	30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정도	10	
	편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교통체계의 부합성	10	
관광·레저형 ⑦	지역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의 역량	10	30
	독특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차별화 전략의 적절성	10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10	
방재·안전형 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10	30
	도시재난 및 안전관리 효과 정도	10	
	재해 및 범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10	
교육학습형 ⑨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성	10	30
	기존 교육합습시설(교육·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등) 및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성	10	
	지역 교육자원의 창출 효과	10	
도시정비형 ⑩	불량한 환경의 개선 정도	10	30
	생활 및 편익시설의 공급 정도	10	
	개성 있고 특색있는 공간(시설)제공 정도	10	

- 시범도시의 현지심사는 서면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료의 사실성 확인, 현장 사업과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며, 총 20점으로 이뤄짐.

② 시범마을의 평가배점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마을단위 사업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라는 특성상, 특화발전유형을 평가하는 개별항목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공통항목평가와 현지심사만 실시함.
-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참여의 생활환경 개선을 주요하게 추진하기에, 주민참여 부문을 강조한 공통항목평가에 배점이 높게 부여됨.
- 마을단위 사업의 평가는 공통항목평가, 현지심사를 통해 진행되고, 공통항목평가의 점수 80점, 현지심사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이뤄짐(<그림 3-2> 참조).



<그림 3-2> 시범마을 사업의 평가지표별 평가배점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마을단위 사업의 공통항목평가는 ‘시범마을’사업에 공통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 특성상 주민참여에 대한 부문에 배점을 높여 이뤄짐.
- 마을단위 사업의 평가 배점은 ① 합목적성, ② 주민 참여 및 지역 사회 협력, ③ 실현가능성, ④ 기대효과 4개 부문별로 차등 배점을 두어 총 80점으로 이뤄짐(<표 3-13> 참조).

<표 3-13> 시범마을 공통항목 평가지표의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총점
합목적성	사업목표와 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의 부합성	8	16	80
	사업주체 역할분담의 적정성	8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계획 및 사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10	30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10		
	다양한 마을 구성원, 지자체 등과의 협력계획	10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협의회의 역량	8	21	
	사업 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8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5		
기대효과	사업의 시급성	8	13	
	사업의 공헌도	5		

3. 과학기술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지침(2007)

1) 개요

(1) 추진배경

- 국가 R&D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 부처의 연구개발 추진의 책임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제정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실시 의무화

(2) 추진방향

- 부처 자율평가, 사업별 절대평가 원칙은 유지하되, '07년도 중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여 '08년까지 자체평가시스템 완성
-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자체평가가 형식적, 자의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마련
- 지역 및 사업별 특성지표 및 질적 지표확대 등 표준상과지표 확대·보안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운영하여 자체평가추진의 효율성 제고

(3) 평가대상 및 표준사업분류

-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및 정부기금으로 추진된 연구개발사업
- 해당부처는 표준사업분류를 참조하여 평가대상사업을 28개 유형으로 분류

<표 3-14> 표준사업분류

대분류	소분류
순수기초	① 연구개발 ② 인력양성 ③ 국제협력 ④ 시설장비(기반)구축
목적기초	① 연구개발 ② 인력양성 ③ 국제협력 ④ 시설장비(기반)구축
단기산업기술	① 연구개발 ② 인력양성 ③ 국제협력 ④ 시설장비(기반)구축
중·장기 산업기술	① 연구개발 ② 인력양성 ③ 국제협력 ④ 시설장비(기반)구축
공공서비스	① 연구개발 ② 인력양성 ③ 국제협력 ④ 시설장비(기반)구축
보건·농림수산·환경	① 연구개발 ② 인력양성 ③ 국제협력 ④ 시설장비(기반)구축
지역	① 연구개발 ② 인력양성 ③ 국제협력 ④ 시설장비(기반)구축

2) 평가절차 및 방법

(1) 평가절차

① 1단계 : 자체평가계획 수립

- 해당부처는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지표에 따라 사업별로 성과 취합
- 평가위원회구성·운영방법, 평가방법 등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

② 2단계 : 자체평가 실시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2/3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확인
 - 기밀을 요할 경우 1/3내외로 외부전문가 구성 가능

③ 3단계 : 자체평가결과 작성 및 국과위 제출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평가결과를 「자체평가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국과위에 제출하되, 우수등급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

④ 4단계 :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

- 상위평가결과 통보 후 필요시 이의신청 또는 재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부처 실링 내 예산배분에 활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수립

(2) 평가방법

① 평가지표의 설정

- 해당부처는 성과목표·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사업별 실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핵심지표로 우선 설정

② 성과목표·지표 설정방법

- 성과목표 설정방법
 -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성
 -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설정
 - 과거 3년간의 실적의 평균치 또는 추세치를 고려하여 설정
 -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 지나친 하향설정 지양
- 성과지표 설정방법
 - 자체평가지침의 성과지표해설을 참조하여 항목별 지표를 적절히 활용
 - 성과목표 달성도를 쉽게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지표 설정
 - 사업의 추진목적, 기술특성에 맞는 지표 설정
 - 자료 획득 및 활용이 용이한 지표 설정
 - 대표성이 없는 지표의 통합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도록 주의

<표 3-15> 성과목표·지표 설정사례

성과목표	성과지표
농업생산성 증가	• 농가에 대한 대출건수
중소기업 지원만족도	• 중소기업 지원건수
실업률 감소	• 훈련자수 • 고용자수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	• 고속도로의 수/거리
논문	• 분야별 SCI학술지 평균인용률 대비 논문인용도
특허	• 특허인용건수

③ 가중치 부여

-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기획·집행, 결과비중을 차별적으로 적용
 -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성

<표 3-16> 추진단계에 따른 가중치

구분	성과지표	가중치
기획·집행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 0.4~0.5 • 계속사업 : 0.1~0.3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사업개선실적(전년도 평가결과 활용도)	
결과	사업별로 5~15개 내외의 지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 0.5~0.6 • 계속사업 : 0.7~0.9

④ 평가등급의 도출

- 해당부서는 기획·집행, 결과부문의 지표별 목표달성도에 가중치를 합산한 점수를 종합하여 5단계 평가등급 도출
 - '정상' 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성과달성도는 등급별 기준점수를 반영

<표 3-17> 평가의 등급

성과초과달성		성과달성	성과미달	
매우 우수 (150% 초과)	우수 (150% ~ 120%)	정상 (120% ~ 80%)	미흡 (80% ~ 50%)	매우 미흡 (50% 이하)

3) 평가양식

1. 사업성과					
▶ 항목별 평가점수					
사업목적(전략목표):					
구 분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도 (달성도/목표치)	가중치 (0~1)	평가점수 (성과달성도×가중치)
기획 · 집행		공통 지표	신규사업: 0.4~0.5 계속사업: 0.1~0.3
		
결과	성과목표 1	5~15개	신규사업: 0.5~0.6 계속사업: 0.7~0.9
	성과목표 2	
	· ·	
종합점수				1	
<p>* 핵심지표의 경우 볼드체로 표시하고, 고유지표 설정 시 괄호안에 “고유지표” 라고 표시</p> <p>** 신규사업 : 2년 미만 사업</p> <p>‘06년도 국과위에 기 제출한 성과목표/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06년 국조실</p> <p>*** 에 제출(5월, 11월)한 R&D 성과목표/지표와 상이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고 국과위, 국조실</p> <p>기 제출된 자료를 첨부자료로 제출</p> <p>**** 점수환산방법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수로 표기</p>					
▶ 종합등급					
매우 우수	우수	정상	미흡	매우 미흡	
※ 해당란에 ‘○’ 표시					

4.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지침(2007)

1) 개요

(1)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추진목적

- 성과목표·지표 및 자체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여 자치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2) 평가대상 및 항목

(1) 평가대상

- 18개 부·청 154개 사업의 자체평가결과

(2)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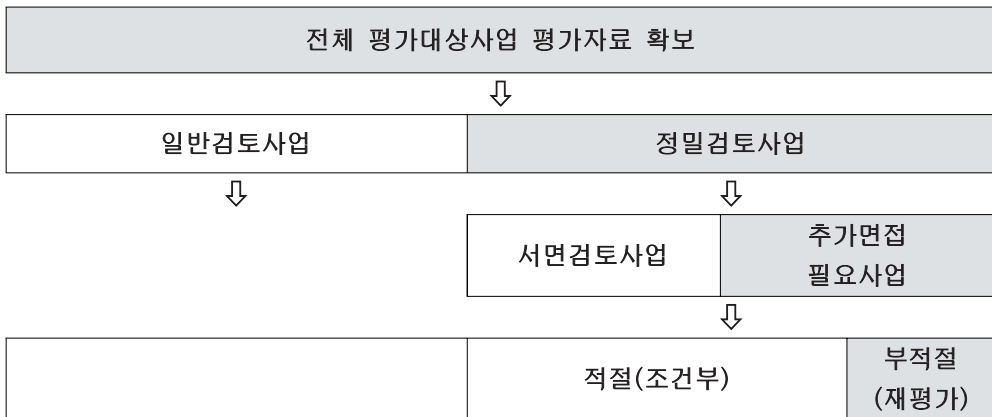
-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 자체평가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 평가결과의 적절성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활용

<표 3-18> 상위평가항목·지표 및 평가등급부여 방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1. 성과목표의 적절성	1-1 성과목표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적절(조건부) • 부적절(재평가)
2. 성과지표의 적절성	2-1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3. 평가결과의 적절성	3-1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3-2 평가등급의 적절성	
4. 자체평가 방법·절차의 적절성	4-1 자체평가방법의 적절성 4-2 자체평가절차의 적절성	
5.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	5-1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실적 5-2 향후 개선계획의 합리성	

3) 평가절차

○ 평가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 3-3>과 같음.



주1) '정밀검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추가자료 요청(관계부처는 별도자료 생산 없이 자체평가에 사용했던 자료 등 기존자료 제출)

주2) '조건부 적절사업'은 평가결과는 적절이나, 성과목표/지표, 평가방법, 체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수정/개선 의견이 추가

<그림 3-3> 평가절차도

4) 평가지표의 해설 및 측정방법

① 성과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적 성과목표의 부합성

○ 지표해설

- 사업성과목표가 사업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가?

○ 측정방법

- 기획당시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의 적절성
- 사업수행단계별 사업목적의 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재설정 여부 및 그 적절성
-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재설정 여부 및 적절성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 지표해설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 성과지표의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부여되었으며 부여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 측정방법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타당성 여부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자료(예시 : 논문, 특허, 기술이전건수, 자료수집체계 등)
- 선정된 지표의 측정가능성 여부
- 가중치 부여기준의 합리성
- 지표체계의 성과영역별 배분의 적절성

③ 평가결과의 적절성

■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 지표해설

- 평가 보고서는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항목별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측정방법

- 평가 보고서의 양식 준수 여부
- 평가자의 평가의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여부

■ 평가등급의 적절성

○ 지표해설

- 성과대비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 부여가 적절한지 여부

○ 측정방법

- 성과항목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가중치에 따른 환산점수 및 종합점수를 도출하여 5단계(매우우수~매우미흡) 평가등급 부여

④ 자체평가방법·절차의 적절성

■ 자체평가방법의 적절성

○ 지표해설

- 평가목적과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체평가방법을 선정하였는가?

○ 측정방법

- 자체평가방법의 사업특성 및 평가목적과의 적합성

■ 자체평가절차의 적절성

○ 지표해설

- 평가목적과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체평가절차를 선정하였는가?

○ 측정방법

- 자체평가절차의 사업특성 및 평가목적과의 적합성

⑤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

■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실적

○ 지표해설

- 전년도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사업이 조정/개선되었는가?

○ 측정방법

-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른 해당사업 조정/개선의 여부
- 전년도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를 제시하는 자료

■ 향후 개선계획의 합리성

○ 지표해설

-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에 대해 아직 개선 전이거나 장기적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은 합리적인가?

○ 측정방법

- 수립된 사업개선 계획이 시간, 비용 및 소요인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활력증진계획평가 세부계획(2007)

1) 개요

(1) 평가목적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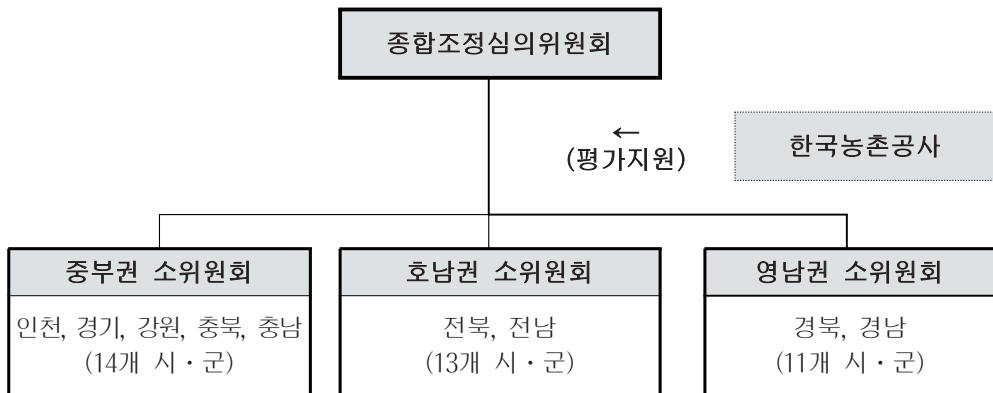
-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목표·성과지표, 계획의 적정성·구체성·실현 가능성 및 사업간 연계성 등을 심사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신활력사업 등 연관사업간 연계추진을 촉진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
- 권역별 배분방식 탈피,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성과제고 극대화

(2) 평가대상

- 시·도에서 자체평가 결과 추천한 38개 시·군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 지역협력단, 혁신협의회 등 특정 시·군 업무 관련자는 해당 지역을 배제하여 위원 구성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3개 권역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한국농촌공사는 평가간사로서 평가단운영 및 평가결과의 취합정리 등 평가업무 전반 지원



<그림 3-4> 평가위원회 구성도

① 종합조정심의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
- 위 원 :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 간 사 : 한국농촌공사 전문가

■ 기능

- 시·도 평가 결과 38개 시·군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우수 28개 시·군을 결정
- 28개 시·군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 조정 심의하여 우수 시·군 등급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금액 배정(안) 작성

■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
-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
- 3개 권역별(중부, 호남, 영남) 평가결과 협의 및 조정 후, 우수 시·군의 등급부여와 등급별 인센티브 금액 배정(안)을 작성
 - A등급부터 각 도별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평점 조정 및 등급 배정
 - 권역별, 시·도별 배분방식 지양, 평가대상 전체 시·군 대상 4개 그룹으로 등급화(A~D)

② 소위원회

■ 구성

- 소위원장 : 권역별 소위원회 위원 중 1인 호선
 - 현장 평가 시에는 위원 중 팀별 팀장 1인 호선
- 위 원 : 신활력사업 자문위원 중심으로 권역별 7명의 위원 구성
 - ※ 위원회별 평가위원 중 1명을 지정하여(공무원은 제외) 보고서 총괄 작성을 위임
- 간 사 : 한국농촌공사 전문가

■ 기능

-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서 검토 및 시·군별 서면 및 현장평가

■ 운영

- 권역별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
 - 현장 평가 시에는 팀장이 주재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결정
 - 현장 평가 시에는 평가위원수가 소수인 점을 감안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의거 결정

③ 운영방식

■ 서면평가 운영방식

-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도와 협의한 시·군별 순서에 따라 평가 실시
- 시·군 관계자 사업 설명(10분), 질의·답변(시·군당 30분)후 평가 위원별 평가 실시(10분)
 - 평가대상 기관장은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별로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시·도별 집계 시에는 시·군별 평가위원별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정함.
- ※ 시·도 자체평가 결과 등위에 관계없이 원점(Zero-Base)에서 평가
- 권역별로 소위원장 호선, 소위원장 중심으로 평가 진행
 - 선정된 소위원장은 향후 종합 조정·심의 회의에 반드시 참석
- 평가결과를 각 시·도별로 4개 등급(A, B, C, D)으로 분류하되 시·군 간 동점 없이 순위(평점) 부여
 -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70점 미만)
- 등급별 강제배분은 하지 않으나 적정하게 분산이 되도록 평가
- 평가 종료 후 각 권역별로 소위원장 책임 하에 평가표, 집계표, 평가항목별 의견 및 확인사항, 평가결과를 제출

■ 현장평가 운영방식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28개 우수 시·군을 권역별 2개 팀으로 나누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 실시

- 시·군별 지자체장 면담(20분 이내)후 현장평가(총 2시간 이내)
 - 기관장 면담 실시, 현장방문 및 참가자들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
 - 참가자 : 시·군 관계공무원, 현장담당자(현장방문 시), 사업추진단체 및 관계자, 지역협력단 등
- 평가 종료 후 각 팀별로 현장평가 결과를 소위원장에게 제출

3) 평가표

① 평가위원별 평가표

- 평가위원별 평가표는 다음 <표 3-19>와 같음.

<표 3-19> 평가위원별 평가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점수					점수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총 점			100						
농촌 활력 증진 계획 의 목표	소 계		25						
	목표제시의 적절성(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의 현실성 ○ 계획 목표와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10						
	성과지표의 적절성(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성과지표 목표제시 여부 ○ 사업별 성과지표 적절성, 실현 가능성 ○ 중기지표와 연차별 지표와의 연계성 ○ 성과지표와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15						
사업 추진 체계	소 계		2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관 구성 여부 및 위원 선정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대표성 · 전문성 · 혁신성을 가진 인사 위주 선정 ○ 참여기관 운영의 활성화 정도 (회의 · 워크숍 등 협의회 개최 횟수, 계획수립 참여 여부 등) ○ 참여기관 간의 네트워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 학 · 연, 자문위원회, 협의회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성 여부 ○ 참여기관의 자율성 부여 정도 	8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 등 전담기구 구성 · 운영 및 민간단체 참여 여부 ○ 시 · 도의 활동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 · 군 관계자 교육, 워크숍, 합동 작업실적 등 	8						
	내부 및 지역주민 의사 수렴(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 공청회 등 개최 여부 ○ 사업 아이디어 공모 개최 여부 ○ 사업계획 지역 주민 홍보 등 인지도 	7						
재정 계획 의 적정 성	소 계		15						
	신활력지역 발전 구상과의 적합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년 H/W사업 비중 ○ 3개년 재정투입계획 대비 단순지원 사업 투입 비중 정도 ○ 3개년 재정투입계획 대비R&D, 지식 기반 등 부가가치 구축 투입 비중 정도 	10						
	재원 투자 계획의 적정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별 예산배분 적정성 ○ 추가재원확보정도 (지방비, 자부담 비중) 	5						

(계속)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점수					점수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사업 계획 내용의 적정성	소 계		20						
	교육 및 홍보의 적정성 (5점)	○ 혁신역량 강화 등 교육 계획수립 적정성 및 기대효과 ○ 사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계획 수립 적정성	5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5점)	○ 지역현황 분석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선정 여부 ○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 다른 지역 비교대상사업 대비 우위성	5						
	사업시행 효과의 극대화 (10점)	○ 선택과 집중화된 사업 선정 정도 ○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등의 연계성	10						
사업의 파급 및 기대 효과	소 계		12						
	지역발전 기여도 (10점)	○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기여 정도 ○ 외부 방문객유치 및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 정도	10						
	파급효과 (2점)	○ 사업과 연계된 기업 유치 계획 정도	2						
사업 계획 연계성	소계		5						
	타 사업 등과의 연계성 (5점)	○ 타 사업 간의 연계성 정도 (향토사업, 특화사업 등) ○ 타 지역 간의 연계성	5						
감점 사항	○ 사업계획서보완 횟수/제출기한 초과 (회당 2점 감점)								

※ 참고 : 탁월×1.0, 우수×0.8, 보통×0.6, 미흡×0.4, 부진×0.2

② 서면평가 집계표

○ 서면평가의 집계표는 아래의 <표 3-20>과 같음.

<표 3-20> 서면평가 집계표

시·군 별	평가 위원1	평가 위원2	평가 위원3	평가 위원4	평가 위원5	평가 위원6	평가 위원7	※총점 (5명)	※평균 (5명)	순 위
00시군										
00시군										
00시군										

※ 작성요령

1. 시·군별로 총점 합산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함(× 표시)
2. 시·군별 평균점수는 총점을 합산한 위원 수로 나누어 산출함.

③ 시·군별 평가항목 집계표

○ 시·군별 평가항목 집계표는 아래의 <표 3-21>과 같음.

<표 3-21> 시군별 평가항목 집계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총 점	평 균
1.농촌 활력증 진계획 의목표	1-1 목표제시의 적절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사업 추진 체계	2-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2-2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2-3 내부 및 지역주민 의사 수렴										
3.재정 계획의 적정성	3-1 신활력지역발전 구상과의 적합성										
	3-2 재원투자계획의 적정성										
4.사업 계획 내용의 적정성	4-1 교육 및 홍보의 적정성										
	4-2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4-3 사업시행 효과의 극대화										

(계속)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위원	총 점	평 균
5.사업의 파급 및 기대 효과	5-1 지역발전 기여도									
	5-2 파급효과									
6.사업 계획 연계성	6-1 타 사업 등과의 연계성									
7.감점 사항	7-1 사업계획서보완 횟수/제출기한 초과 (회당 5점 감점)									

④ 현장평가표

○ 현장평가에 사용을 위한 평가표는 아래의 <표 3-22>와 같음.

<표 3-22> 현장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사유
	소 계	5	
가점 항목	1. 기관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 사업내용의 충분한 인지 2. 주민의 높은 호응 및 참여도 3. 사업 관련 주체, 외부전문가 등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4. 벤치마킹 사례 가능성 5. 시·군 담당자의 사기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기타		
	소 계	5	
감점 항목	1. 사업의 집중도 취약(지역별 나누어 주기 식 등) 2. 사업예산의 과도한 부풀리기 3. 사업내용과 사업지역(현장)의 연계성 부족 4. 기타		

※ 예시한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특별하게 잘하거나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감점을 부여하고 반드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6. 농림부,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계획(2007)

1) 개요

(1) 근거 및 목적

- 신활력사업 추진 공동지침 제15조
 - 매년 사업추진의 적절성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등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 수정·보완 여부 등 검토
- 선도지역 발굴·육성을 위해 차등적 재정인센티브 부여
-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2) 기본방향

- 사업 3년차로 사업 본래 목적달성과 적정 추진정도 중점 평가
 - 사업추진 실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집행 내용·성과 반영
- 다단계 평가 실시,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내용·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확인
- 시·도, 지역협력단 단원의 참여·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
 - 평가위원으로 도 과장 등 공무원을 선정하여 평가에 참여
- 권역별 배분방식 탈피,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성과제고 극대화 도모

2) 평가방법

(1) 기본방침

- 시·도 주관으로 산하 시·군 자체평가 실시, 농림부에 추천
 - 시·도 평가결과 우수 시·군 50%
- 중앙정부에서는 추천된 시·군에 대해 현지평가 실시
 - 3개 권역별로 집합평가 실시(3개팀), 필요시 현장 점검
- 3개 팀 간 종합 조정·심의 후 우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A·B·C·D),
 - C등급까지 인센티브 지급('06년 26개 시·군)
- 신활력사업 자문위원회, 중앙 관계부처 공동추진단 상정·우수 시·군 최종 결정

(2) 단계별 평가

① 1차 : 시·도 자체평가

- 평가단 : 공무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관계전문가 등
 -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편성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5인 이상 적정 인원으로 구성
- 평가방식
 - 중앙단위 평가표를 참조하여 시·도별 세부평가항목 작성
 - 강제배분 평가를 실시, 관할 시·군별 순위 등위화
 - 시·군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② 2차 : 중앙 현지평가

- 대 상 : 1차 우수 시·군(38개 시·군, 시·도별 50% 기준)
- 평가단 구성 : 3개 반 15명(1개 반 5명)
 - 관계공무원 2명 [농림부(균형위), 도(과장 또는 사무관)], 전문가 3명
 - 전문가는 신활력자문위원, 지역협력단 위원으로 구성
- 평가방식
 - 시·군별 관계공무원 보고(20분)/ 질의·답변(총 90분)
 - 시·군 제출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 정량평가 위주로 심의하되,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평가 병행
 - 우수·보통·미흡 3등급으로 강제배분 평가(세부항목별 점수화)

③ 3차 : 종합조정·심의

- 참석범위는 현지평가 평가위원 전원(도 평가자는 제외)
- 조정 및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3개 권역별 평가결과 협의 및 조정
 - 조정 점수(의견)는 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
 - 권역별 강제 배분방식 지양, 평가대상 전체 시·군 대상 4개 그룹으로 등급화(A~D)

3)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5개 부문 10개 항목임.
 - 사업추진태세(15%), 사업추진실적(40%), 사업성과 및 효과(30%), 홍보 실적(5%), 수범사례 및 시·도활동(10%)
 - +5점 이내 가점(종합의견 등), -10점 이내 감점(보완·지적사항 이행 등)(<표 3-23> 참조)

<표 3-23>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 점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소 계			15		
1. 사업추진태세	1-1 단체장(부단체장)관심도 및 추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실적, 지시사항 및 조치내용 - 횟수에 따라 0.5점 부여(최대 5점) 	5	3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군수 주재 주간·월례회의 지시사항 및 조치내용 등 - 회당 0.25점 부여(최대 5점) 	5	3	0
	1-2 지역협력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단 구성여부 및 선정위원 적합성 - 지역 대표성·전문성을 갖춘 인사 선정 등 ■ 협력단 운영 활성화 정도 - 자문, 회의 워크숍 개최 등 활동 실적 	5	3	1
소 계			40		
2. 사업추진실적	2-1 지역혁신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체계 구축 실적 - 지역혁신체계 관련 사업유형, 예산 등 	15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리더 육성 실적 - 포럼·아카데미,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 학습활동 	5	3	1
	2-2 세부단위사업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리더의 사업 참여 및 수범사례 - 주민 자체발굴·제안 사업실적 등 	5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율(집행액/ 총사업비) ■ 계획대비 세부단위사업 공정율(진척도) ■ 계획대비 지방비, 민자 확보 정도 ■ 계획 변경 여부 및 변경의 정도 	15	10	5
			5	3	1

(계속)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배 점		
			우수	보통	미흡
소 계			30		
3. 사업 성과 및 효과	3-1 지역발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소득, 고용, 매출액 증가 등 - 지역장기 비전과의 부합, 혁신성과의 파급 정도 - 기타 향후 기대효과 등 	15	10	5
	3-2 사업관리 및 개선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관리 및 피드백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주민만족도 조사 등 	5	3	1
	3-3 사업의 성공 가능성·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지속성 여부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실행전략, 투자계획 등 	10	7	4
소 계			5		
4. 홍보 실적	4-1 사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상회보, 시·군 정보지 등 자체 홍보 실적 ■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실적 ■ 기타 홍보실적 ※ 사업계획상의 홍보사업 제외 	5	3	1
소 계			10		
5. 수범 사례 및 시·도 활동	5-1 우수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실적(농림부,균형위 주관 신활력 사업 관련 행사만 해당) *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1점) 부여 	2회3	1회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수범/ 우수사례 	2	1	0
	5-2 시·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 관계자 교육, 워크숍, 지도점검, 합동작업 실적 등 ■ 시·도 자체 예산확보 및 투입 실적 	5	3	1
6. 가점 +5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색을 담은 참신한 지역계획 수립, 추진상황, 기관장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 ■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3회 이상인 경우 가점 				
7.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보완·조정사항 이행여부 및 정도 ■ 전담직원 없는 경우(2점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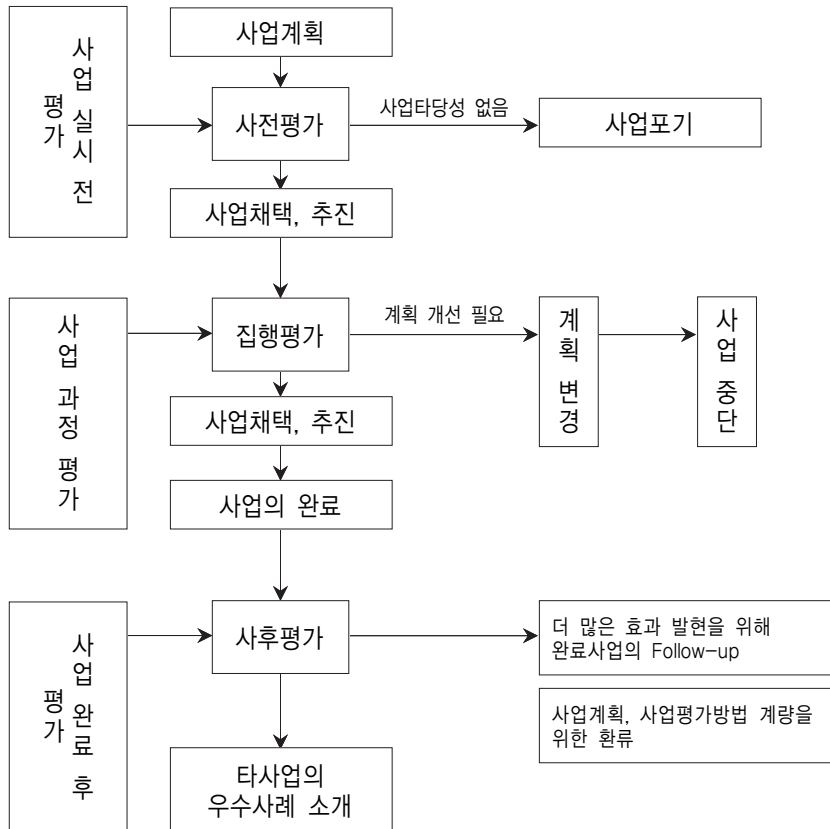
제 2 절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1. 평가의 필요성·성격 및 목적

1) 평가의 필요성·성격

- 전라북도는 도와 시·군 간의 균형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발전을 위해 1시·군 1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해당 시·군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화 전략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지원을 실시함.
- 현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예산배분방식은 균등배분방식이나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정책적 성격보다는 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평가는 평가목적, 평가시기, 평가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
 - 첫째, 평가목적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의 검토를 통한 효과 발생과정 규명 및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수립하는 과정평가와 결과의 평가를 통한 효과성과 능률성을 파악하는 효과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둘째, 평가시기에 따라서 각종 대안의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평가와 실행과정 중의 문제점 해결 및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집행평가, 사업완료 후의 성과나 효과의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셋째, 평가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부평가는 다시 평가대상사업의 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는 분권적 평가와 관리부문이나 최고관리자가 평가하는 집권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초기진행단계에 있으므로 사전평가나 사후평가의 성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행평가로서 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문제점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더욱이 집행평가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현 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추진 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비해 현실적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5> 사업평가 및 집행 모니터링 절차

- 또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의 성격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행되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시간 동안 외부환경(사회·경제적 환경, 기술적 조건, 정치적 환경, 국가의 기본정책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이러한 요인들이 초래하는 파급효과 및 영향을 감시하고, 그 경과에 기초하여 계획의 새로운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업평가의 성격을 가짐.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실행, 결과 및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석하기 위한 평가이므로 전략의 효과성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증거자료 획득이라는 지식의 관점,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운용상의 질에 대한 책임부과라는 책임성의 관점에서 사업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됨.
- 즉,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는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사업의 계속적 추진여부는 물론 대안적인 사업의 검토를 도모하는 사업평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과정평가라 할 수 있음.

2) 평가의 목적

- 일반적으로 사업평가의 목적은 사업결정 및 집행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는 지식과 학습의 관점, 관리의 관점, 책임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지식과 학습의 관점에서 1시·군 1프로젝트 평가의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들과 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전략의 효과성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얻고 평가과정에서 제기되는 논쟁을 통하여 학습을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둘째, 관리의 관점에서 1시·군 1프로젝트 평가의 목적은 정부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대안의 선택과 개선,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시스템으로서의 의의가 있음.
- 셋째, 책임성의 관점에서 1시·군 1프로젝트 평가의 목적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주체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임.
- 정리하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목적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개선과제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모색하는 데 있음.

2. 평가의 주체 및 평가지표 개발의 기준

1) 평가의 주체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주체는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 사례들을 보면 대개 자체평가로 진행되거나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혼합한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자체평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변경 등 단계별 평가주체가 상이하고 사업집행부서와 평가부서 간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아서 자료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평가주체가 평가목적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함.

- 한편, 외부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평가결과가 사업추진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또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각 단계별 평가주체가 상이하고 이들 심사부서와 집행부서 간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더욱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자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능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앞서 평가의 목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주요 목적이므로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일회성 평가가 아닌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평가단 구성이 필요함.

2) 평가지표 개발의 기준

- 일반적으로 사업평가의 기준은 효과성, 적시성, 능률성, 주민만족, 형평성, 대응성, 공익성 등으로 구분되는 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즉, 보통 기존의 사업평가는 사업의 결과 및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진단 및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실 처방적인 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함.

- 또한 이와 같이 차별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실행주체,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성격, 국가예산지원대상의 유무, 마스터플랜 수립주체 등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평가대상을 구분할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일 수 있지만,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통해서 해당 사업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하여 해당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사업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는 측정가능성, 개선가능성, 통제가능성, 상대적 중요도, 충분성, 비교가능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지표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3-24> 참조).
- 첫째, 일반적인 평가항목 선정기준과 같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에서도 평가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둘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대상사업의 개선이라고 할 때 평가항목의 선정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평가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평가항목은 평가항목으로서 실익이 없기 때문임.
- 셋째, 통제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통제 가능하다는 함은 피평가자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피평가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넷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항목은 피평가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중요도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의 수를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각 항목 간의 구분이 모호한 평가항목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평가대상 분야에 대해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평가항목으로 평가하지 않는지 혹은 반대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섯째, 평가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평가업무·평가관리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도별 개선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평가항목 선정기준들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선정된 평가항목 간에도 우선순위가 마련되어야 함.
- 일곱째, 사업의 진행단계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평가체계 속에서도 평가시점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융통성의 부여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2008년 12월에 실시할 평가(이하 ‘1차 평가’라 함)’와 ‘1차 평가 이후에 실시할 평가(이하 ‘2차 평가’라 함)’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

<표 3-24> 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지표의 선정기준

선정기준	세부내용
측정가능성	• 계량화가 가능한가?
	• 정기적 측정이 가능한가?
산출객관성	• 지자체 공식 자료에 의해 지표산정이 가능한가?
	• 지표 산출 공식이 객관적인가?
이해용이성	•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해하기 쉬운가?
명확성	• 지표 값 및 그 추이를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가?
대표성	• 사업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가?
	•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가?
효과성	• 해당 지표가 사업추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
종합성	• 사업 전체의 전반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
형평성	• 특정영역과 항목에 치우치지 않고 항목을 대표하도록 선정
신뢰성	•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표 선정
평가객관성	• 질적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되도록 객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
자료수집 용이성	•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는 평가지표 선정
상대적 중요도	•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또는 가중치 부여

3. 평가대상의 그룹화

1) 그룹화 방안의 검토

- 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대상은 총 14개 시·군의 14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역량, 사업의 성격, 사업의 내용 등이 서로 달라서 전체를 하나의 평가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합리성, 공정성 등의 확보에 큰 제약이 존재함.

- 따라서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대상인 14개 사업을 적절하게 그룹화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그룹화 할 것이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는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객관적인 타당한 기준과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현황분석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사업의 시행주체,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성격, 국가예산대상사업의 여부, 마스터플랜의 수립주체 등이 평가대상을 그룹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평가대상을 그룹화 할 것인지, 어떻게 그룹화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은 피평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면서 평가대상의 그룹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방안

- 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는 지치단체별로 추진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그룹화 하는 방안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시가 사업시행주체인 사업’과 ‘군이 사업시행주체인 사업’으로 그룹화 할 수 있음. 즉, 14개 사업은 시가 시행주체인 6개 사업과 군이 시행주체인 8개 사업으로 그룹화 할 수 있음(<표 3-25> 참조).

<표 3-25>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방안

시가 시행주체인 사업	군이 시행주체인 사업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6개 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8개 시·군)

(2) 사업내용 및 도 주무부서에 따른 그룹화 방안

- 사업의 내용에 따른 그룹화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룹화 하는 방안으로서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의 경우는 문화관광중심사업,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의 경우는 산업육성중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3-26> 참조).

<표 3-26> 사업내용에 따른 그룹화 방안

문화관광중심사업	산업육성중심사업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5개 시·군)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9개 시·군)

- 한편 도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시·군 간의 연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주무 부서를 정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는 그룹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임(<표 3-27> 참조).

<표 3-27> 도의 주무부서에 따른 그룹화 방안

문화체육관광국	전략사업국	농림수산식품국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4개 시·군)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	익산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7개 시·군)

- 종합하건데, 도의 주무부서 역시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사업내용 및 도 주무부서(이하 ‘사업내용 등’이라 함.)를 함께 고려하여 그룹화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실제 농수산식품국이 주무부서인 사업의 경우 장수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업육성중심사업에 포함되며, 전략사업국이 주무부서인 사업도 내용상 산업중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무부서인 사업 역시 문화관광중심사업으로 구분됨.

- 따라서, 사업내용과 도 주무부서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국이 주무부서인 사업과 전략사업국이 주무부서인 사업은 산업육성중심사업으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무부서인 사업은 문화관광중심사업으로 구분하여 그룹화 함(<표 3-28> 참조).
- 다만, 장수군의 경우 현재 농림수산물식품국이 주무부서이어서 산업육성중심사업으로 구분되지만 장수 말 산업은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에서는 승마레저타운조성이므로 문화관광사업으로 최종 구분함. 그리고 도 주무부서도 2단계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표 3-28> 사업내용 및 도 주무 부서를 고려한 그룹화 방안

문화관광중심사업	산업육성중심사업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5개 시·군)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9개 시·군)

(3) 사업성격에 따른 그룹화 방안

- 사업의 성격, 즉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등으로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 간에 평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1단계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성격 및 추진 상황 등(이하 '사업성격 등'이라 함)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표 3-29>와 같이 그룹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즉, 군산시 등 5개 시·군은 신규 사업으로, 나머지 9개 시·군은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그룹화 함.

<표 3-29> 사업성격에 따른 그룹화 방안

신규사업	계속사업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5개 시·군)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9개 시·군)

2) 그룹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대응전략

- 1시·군 1프로젝트의 평가대상이 14개 사업밖에 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상 살펴 본 그룹화 방안을 모두 적용할 수는 없음.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룹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필요가 있음.
- 또한 그룹화의 목적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룹화하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며,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뿐만 아니라 1차 평가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의 2차 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아도 무방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상 제기된 각각의 그룹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그룹화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1) 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대응전략

- 대안 1 : 그룹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안
 - 평가 자체를 시단위 사업과 군단위 사업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안임.
 - 사업시행주체의 추진능력의 차이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우수 사업의 선정 폭이 넓어짐.
 - 관련 시에서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대안 2 :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되 군이 시행주체인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임.
 - 가중치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함.

- 대응전략
 - 시행주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준비상황 등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군이 시행주체인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사업이 국가지원대상 사업으로써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사업이 많음.
 - 또한 시행주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 평가대상이 소단위 나누어 질 소지가 매우 높음.
 - 따라서 사업의 추진상황 등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또는 가중치 부여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2) 사업내용 및 도 주부부서 따른 그룹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대응전략

- 대안 1 : 그룹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안
 - 평가를 ‘문화관광중점사업군’과 ‘산업육성중심사업군’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안임
 - 사업내용의 차이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우수사업의 선정 폭이 넓어짐.
 - 사업내용의 차이는 주로 사업추진의 실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차이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움.

- 대안 2 :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되 평가지표를 달리하는 방안
 - 사업의 서열화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1차 평가의 제한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우수사업의 선정 폭이 줄어들며,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다소 유리할 수 있음.

- 대응전략
 - 1차 평가 평가뿐만 아니라 2차 평가까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는 대안 1 보다 두 그룹으로 나누는 대안 2가 보다 합리적이며 궁극적인 안이라고 판단함.
 - 다만 이번 1차 평가에서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두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며, 평가지표 또한 공통평가지표로만 평가함.
 - 한편 두 그룹 간의 평가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대안 1에서 언급한 그룹별 개별평가지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3) 사업성격에 따른 그룹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대응전략

- 대안 1 : 그룹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안
 - 평가 자체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안임.
 - 각 그룹별로 평가되므로 사업의 성격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차이를 해소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우수사업의 선정 폭이 넓어짐.
 - 앞서 살펴 본 사업내용 등에 따른 구분과 병행된다면 너무나 많은 소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대안 2 :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되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
 - 평가군을 나누지 않되 사업성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
 - 가중치에 대한 객관성과 함께 경험축적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움.
- 대응전략
 - 이 또한 1차 평가의 경우 2차 평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음. 즉, 1차 평가 때는 사업초기단계의 평가로서 사업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실적이 중요시 되는 2차 평가에서는 사업의 성격 및 추진상황 등에 따른 고려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따라서, 앞서 사업내용 등에 따른 그룹화 방안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평가에서는 사업내용 등에 따른 그룹화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대안 2보다는 대안 1과 같이 사업성격에 따라 그룹화 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2차 평가에서는 사업내용 등에 따른 그룹화는 실시하되 사업성격 등에 따른 그룹화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차별된 평가가 필요하다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안 1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4) 대응전략의 종합

- 이상 살펴 본 그룹화 방안별 대응전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표 3-30> 참조).
- 첫째,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또는 가중치 부여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음.
- 둘째, 사업내용 등에 따른 그룹화는 1차 평가의 경우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도 공통평가지표만으로 평가함. 그러나 2차 평가에서는 사업내용 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함. 또한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평가지표의 개발도 필요함.
- 셋째, 사업성격 등에 따른 그룹화는 1차 평가의 경우 사업내용에 따른 그룹별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함. 그러나 2차 평가의 경우에는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함.

<표 3-30> 평가대상의 그룹화 방안별 대응전략

그룹화 방안	대응전략
시행주체에 따른 그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화 하지 않음.
사업내용 등에 따른 그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평가에서는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고 공통평가지표로만 평가함. • 2차 평가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공통평가지표 뿐만 아니라 그룹별 개별평가지표로도 평가함.
사업성격에 따른 그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평가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2차 평가에서는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가중치를 부여함.

제 3 절 평가지표 개발

1. 기본방향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1시·군 1프로젝트는 해당 시·군마다 추진여건이나 추진단계 등이 매우 상이한데다 1개의 프로젝트가 1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업평가와 같이 효과성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또한, 1시·군 1프로젝트 평가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환류(feed-back)기능이라고 할 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평가지표라 할 수 있음.

- 둘째, 현재 1시·군 1프로젝트는 지역별 특성화전략 측면에서 계획되었고 사업추진 초기단계이므로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역발전목표와의 부합성(지역의 발전상, 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재원조달의 합리성(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재원구성의 적절성 등)을 위주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함.
- 셋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도와 해당 시·군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선정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업평가와 같이 평가를 통해 사업자체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여러 개별사업들은 평가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욱 적합한 사업으로 수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을 구성하는 주요사업의 기획, 집행,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개별사업의 구성 내용, 투자규모 및 사업별 투자재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수사업과 부진사업을 파악하여 우수 사업은 널리 전파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차년도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넷째, 1시·군 1프로젝트 평가지표는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량적인 평가지표는 객관성 획득이 용이한 반면에 평가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고, 모든 피평가자가 만족할만한 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활용이 단순하다는 단점이 있음.
- 정성적인 지표는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객관적 정보, 데이터, 혹은 사실에 근거하거나, 제3자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하여야 함.

- 결론적으로 1시·군 1프로젝트 평가지표는 한편으로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 근거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정량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추진과정의 피드백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성적인 지표도 개발하여야 하므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성적인 지표를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를 사용해야 함.
- 다섯째, 1시·군 1프로젝트 평가지표는 사업추진단계(사업기획·사업집행·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를 모두 포함하되 실제 평가 시에는 평가시점의 사업추진정도를 감안하여 지표수와 배점을 조정하도록 하고 피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평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도록 함.

2. 기본구성

- 평가지표개발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가지표의 기본구성은 사업의 일반적인 진행절차에 맞추어 사업기획부문, 사업집행부문,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으로 대별함.
 - 특히 모니터링부문은 사업의 추진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위한 것으로서 이번 평가지표개발의 매우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각 부문별 평가지표의 틀은 크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짐.
- 평가지표는 그룹화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평가하는 ‘공통평가지표’와 그룹별로 평가하는 ‘개별평가지표’로 구분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2차 평가 시 사업내용에 따라 문화관광중심사업과 ‘산업육성중심사업’으로 그룹화 되므로 두 그룹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개별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공통평가지표는 평가단계에 따라 1차 평가에만 사용할 평가지표, 2차 평가에 만 사용할 평가지표,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에 사용할 평가지표로 세분함.

- 또한, 1차 평가에 사용할 공통평가지표는 평가대상 시·군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평가지표(이하 ‘순위지표’라 함)와 순위의 결정에는 사용되지 않으나 평가를 통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평가지표(이하 ‘컨설팅 지표’라 함)로 세분됨.
 - 컨설팅 지표는 2차 평가 시에는 순위지표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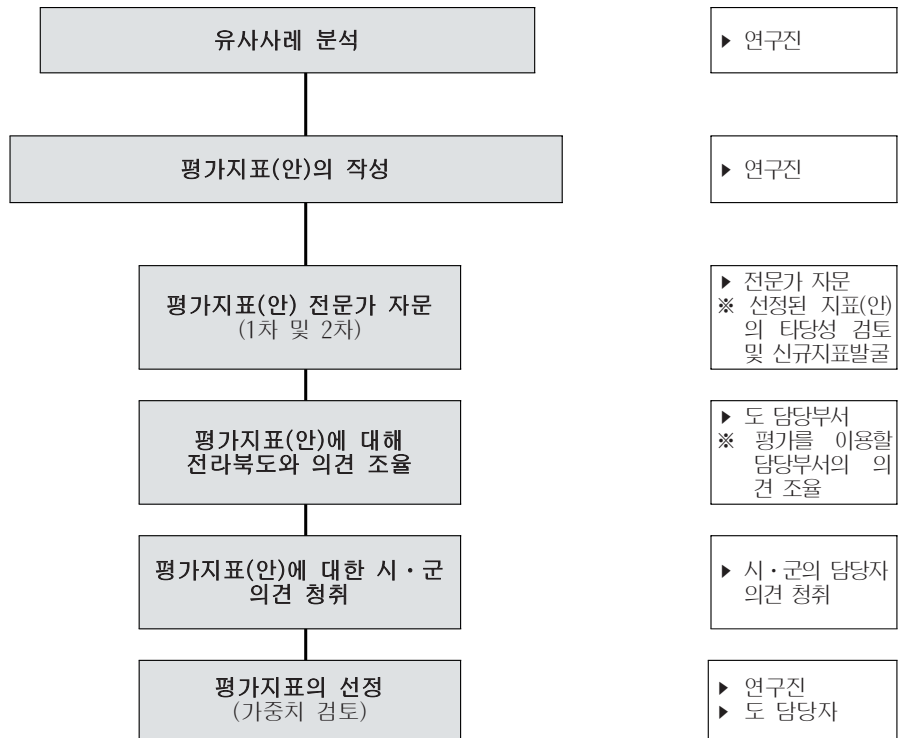
<표 3-31> 공통평가지표의 기본구성(예)

평가부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평가단계별 구분		1차 평가지표의 성격별 구분	
				1차 평가지표	2차 평가지표	순위지표	컨설팅지표
평가부분 1.	1.	1.	1	○	×	○	×
			2	○	○		○
	2.	1	×	○	○		
	·	·	·	·	·	·	
	2.	1.	1	○	○	○	×
			2	○	×	×	○
·		·	·	·	·	·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 공통평가부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유사사례의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지표개발의 기본방향과 기본구성을 토대로 한 평가지표(안)의 도출, 도출된 평가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평가를 담당할 전라북도와의 의견 조율, 그리고 피평가자인 14개 시·군 담당자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음.



<그림 3-6>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

(1) 사업기획부문

사업기획부문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으며, 그 내용이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한가에 대하여 평가하는 부문임.

- 사업기획부문의 평가항목은 ‘추진근거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예산계획의 적절성’의 3항목이며, 세부평가항목의 수는 6개, 평가지표의 수는 14개임.

① 추진근거의 타당성

- ‘추진근거의 타당성’의 세부평가항목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마스터플랜 등 사전절차에 대한 이행 여부’로 함.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로 함.
- '마스터플랜 등 사전절차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지표는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로 함.

②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의 세부평가항목은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수요추정의 유무 및 수요추정의 근거의 타당성'임.
-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사업내용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정합성'으로 함.
- '수요추정의 유무 및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수요추정의 유무', '수요추정 근거의 타당성'으로 함.

③ 예산계획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적절성'의 세부평가항목은 '재원구성의 적절성', '예산확보계획의 합리성'임.
- '재원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합성'으로 함.
- '예산확보계획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미확보 재원에 대한 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으로 함.

<표 3-32> 사업기획부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추진근거의 타당성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
	2.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	1.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3.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
2.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
		2. 사업목표와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2. 수요추정의 유무 및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1. 수요추정의 유무
		2.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3. 예산계의 적절성	1. 재원구성의 적절성	1.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2.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2. 예산확보계획의 합리성	1.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2.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3.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4. 미확보재원 마련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2) 사업집행부문

- 사업집행부문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각 시·군이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사업집행부문의 평가항목은 ‘추진주체의 의지와 역량’, ‘사업수행체계’ ‘목표달성도’,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의 4항목이며, 세부평가항목의 수는 10개, 평가지표의 수는 16개임.

① 추진주체의 의지와 역량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주체는 각 시·군임. 따라서 각 시·군 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큰 잣대가 될 수 있음.
- ‘추진주체의 의지와 역량’의 세부평가항목은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협력정도’, ‘시·군 전담연구자의 활용 여부 및 정도’임.
 -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의 평가지표는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횟수’, ‘전담조직의 유무’, ‘전문가 확보의 여부’임.
 -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도’는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횟수’, ‘추진협의체 구성의 합리성’임.
 -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 여부 및 정도’의 평가지표는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 횟수’임.

② 사업수행체계

- ‘사업수행체계’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도 지침의 수용 정도’임.
 -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의 평가지표는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정도’로 함.
 - ‘도 지침의 수용 정도’의 평가지표는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 여부’로 함.

③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성과지표의 평균달성도’, ‘예산확보 정도’, ‘예산집행 정도’임.
 - ‘성과지표 달성도’의 평가지표는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를 평균한 ‘성과지표 평균 달성도’임.
 - ‘예산확보 정도’의 평가지표는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당해 연도 도비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임.
 - ‘예산집행 정도’의 평가지표는 ‘당해 연도 예산 대비 집행율’,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의 집행 여부’임.

④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추진성과’, ‘홍보실적’임.
 - ‘추진성과’의 평가지표는 ‘당해 연도 민간사업비 대비 유치실적’,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임.
 - ‘홍보실적’의 평가지표는 ‘주민 인지도’임.

<표 3-33> 사업집행부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1.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횟수
		2. 전담조직의 유무
		3. 전문가 확보의 여부
	2.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역사회의 협력 정도	1.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횟수
		2. 추진협의체의 구성의 합리성
	3.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 여부 및 정도	1.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 횟수
2. 사업수행 체계	1.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1.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정도
	2. 도 지침의 수용정도	1.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 정도
3. 목표달성도	1. 성과지표 달성도	1. 성과지표의 평균달성도
	2. 예산확보정도	1.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2. 당해 연도 도비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
	3. 예산집행정도	1. 당해 연도 예산 대비 집행율
		2.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의 집행 여부
	4.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1. 추진성과
2.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		
2. 홍보실적		1. 주민인지도

(3)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

- 사업효과의 유무는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잣대임. 또한 사업모니터링부문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지를 점검·평가하고 그 정보를 정책결정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의 개선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임.

-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의 평가항목은 '사업의 효과성',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사업개선 노력'의 3항목이며, 세부평가항목의 수는 5개, 평가지표의 수는 9개임.

①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여부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임.
-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의 평가지표는 '주민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임.

②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성과지표의 타당성', '문제해결 능력'임.
-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여부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의 평가지표는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여부', '성과지표의 타당성'임.
- '문제해결 능력'의 평가지표는 '단계별 추진목표 및 예산 등 계획변경의 유무', '부진사업의 사유파악과 대책수립여부 및 타당성'임.

③ 사업개선 노력

- '사업개선노력'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노력',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노력'임.
-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노력'의 평가지표는 '연계사업발굴의 유무', '세부사업완료 후 활용 여부'임.

○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노력’의 평가지표는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의 여부’임.

<표 3-34>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사업의 효과성	1.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1. 주민 만족도
		2. 이용자 만족도
2.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1. 모니터링체제의 구축여부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1.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여부
		2.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2. 문제해결 능력	1. 단계별 추진목표 및 예산 등 계획 변경 유무
		2. 부진사업의 사유파악과 대책수립 여부 및 타당성
3. 사업개선 노력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1. 연계사업발굴의 유무
		2. 세부사업 완료 후 활용 여부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노력	1.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의 여부

2) 개별평가부문

(1) 기본방향

-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공통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개별평가를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때 개별평가는 성과평가로 추진, 해당 시·군은 매년 성과목표·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핵심지표로 우선 설정하도록 함.
- 각 시·군이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각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해야하며,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평가결과를 높이기 위해 지나친 하향설정은 지양하도록 함.

- 각 성과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쉽게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자료 획득 및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개별평가부문에 대한 성과지표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관광중심사업군과 산업육성중심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성과지표를 소개하고자 함.

(2) 문화관광중심사업군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문화관광중심사업군의 개별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음 <표 3-35>와 <표 3-36> 성과지표를 참조

<표 3-35> 문화관광중심분야 평가를 위한 계량성과지표

평가항목	성과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비고	
전반적 성과(20)	외국인 입국자수	목표대비 실적	5	관광국 설정	
	관광수입	목표대비 실적	5	관광국 설정	
	외국인 1인당 평균소비액	14개년 추세치	5	'90년 이후	
	외래 관광객 만족도	목표부여	3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관광불편신고 접수건수	목표부여	2	하향목표(목표/실적)	
사업별 성과(50)	관광시설 건설	예산 집행/계획 비용	목표대비 실적	3	
		원공호텔 객실수	4개년 추세치	5	
		소비자물가상승률/Max(소비자물가상승률, 객실요금상승률)	목표대비 실적	5	
	관광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계획비율	목표대비 실적	2	
		외래관광객 숙박평가	목표 부여	3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사업별 성과 (50)		연판매객실수증가율/Max(연판매객실수증가율, 외래객증가율)	목표대비 실적	5	
	국민관광진흥 사업	예산 집행/계획 비율	목표대비 실적	2	
		휴양업체지원 비율	목표대비 실적	5	
	사업체 운영지원	예산 집행/계획 비율	목표대비 실적	2	
		여행사외화수입증가율/Max(여행사외화수입증가율, 관광수입 증가율)	목표대비 실적	3	
		카지노매출증가율/Max(카지노매출증가율, 관광수입증가율)	목표대비 실적	3	
	보조사업	외래 관광객 관광평가	목표부여	3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고궁관광자원화관람증가율/Max(고궁관광자원화관람증가율, 예산증가율)	목표대비 실적	3	
		국제회의 개최수	14개년 추세치	3	'90년 이후
		연구실적 증가율/Max(연구실적증가율, 예산증가율)	목표대비 실적	3	
선정의 적정성 (20)	관광시설 건설	지방사업체 지원 비율	목표대비 실적	2	
		집행/선정 비율	목표대비 실적	3	
	관광시설 개보수	중저가 관광호텔 지원 비율	목표대비 실적	2	
		집행/선정 비율	목표대비 실적	3	
	국민관광진흥 사업	집행/선정 비율	목표대비 실적	5	
	사업체 운영지원	3년 연속 지원여행사 비율	100%-비율	5	
	자산운용 성과(10)	운영수익률/목표수익률	목표대비 실적	5	
수입초과지출평균/현금성자금평잔		목표대비 실적	5		

자료 : 김희수(2004), 200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표 3-36> 문화관광중심분야 평가를 위한 비계량성과지표

평가항목		성과지표
사업운영(70)	재원배분의 적정성(30)	재원 조성의 적정성(10)
		사업 예산배분의 적정성(20)
	관리체계의 합리성(40)	수혜자 선정절차의 합리성(10)
		사후관리의 적정성(20)
		성과지표의 적합성(10)
	자산운용(30)	융자기준의 적정성(10)
자금실사, 융자한도 기준의 적정성(5)		
자산운용 기준의 합리성(20)		현금성자본 보유의 적정성(5)
		금융상품 선택의 적정성(5)
		금융 기관 및 상품 선정 기준의 합리성(5)
		기준 수익률, 허용범위 기준의 합리성(5)

자료 : 김희수(2004), 200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3) 산업육성중심사업군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산업육성중심사업군의 개별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음 “<표 3-37> 산업육성중심사업군 성과지표 예시”를 참조하도록 함.

<표 3-37> 산업육성중심사업군 성과지표 예시

구분	평가기준	평가내용
단지 조성	단지조성실적	○ 계획 대비 단지조성 추진실적
장비 시설	전용공간확보실적	○ 확보면적/계획면적(%)
	장비시설구축실적	○ 계획대비 구축된 장비·시설수(%) ○ 장비·시설의 집적도(상,중,하)
기업 지원	창업보육실적	○ 창업업체수 ○ 창업업체의 매출발생 및 증가율, 고용창출 및 증가율, 수출실적
	연구개발실적	○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수, 금액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출원된 특허수, 연구개발 대상기업의 매출증가분, 생산성 향상율, 수출증가율
	장비활용실적	○ 장비 활용업체수, 구축장비 set수 ○ 장비별 평균이용시간, 장비이용 수수료 수입금액, 장비활용 업체의 경제적 효과
	교육훈련실적	○ 교육훈련 인원수, 교육훈련 시간, 강좌수 ○ 교육훈련 인원 평균 출석율, 교육훈련 인원의 만족도, 교육훈련 수강료 수입금액
	정보이용실적	○ OPEN 정보수 및 활용횟수, 활용비율, 활용기업수, 기업당 활용 횟수
	시험생산 실적	○ 시험생산 지원실적, 수수료 수입금액 등

<표 3-38> 산업육성중심사업 중 연구개발지원 관련 성과지표

지표	작성기준	실적
1. 국내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사업의 결과로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건수	출원 건 등록 건
2. 외국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사업의 결과로 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건수	출원 건 등록 건
3. 기타 지재산	사업의 결과로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기타 지재산수(실용신안, S/W, 의장)	출원 건 등록 건
4. 사업화 건수	T/P지원사업의 결과로 사업화(상품화 포함)된 건수	건
5. 사업화(제품화) 성공과제비율	지원 결과 사업화 성공률=사업화 과제수/총지원 과제수	%
6. 공동연구건수	기술개발지원과제의 형태별 과제수(산-산, 산-학, 산-연, 학-연, 산-학-연 과제수)	산-산 건 산-학 건 산-연 건 산-학-연 건
7. 전략산업별 지원과제수	기술개발지원과제의 전략산업별 선정기준= 산업별 (기계/전기·전자/항공·생물/재료/환경·에너지/기타(광학) 지원과제수	XXX 건 XXX 건 . .

자료 : 산업기술평가원(2008), T/P 조성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표 3-39> 산업육성중심사업 중 경영관리 관련 성과지표

항목	선정지표명	평가방법	정성지표항목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조직관리 합리성	○정성평가 우선 ○정량지표 보완	○조직구조 및 운영 합리화 노력 ○사업 eol 인력관리 적정성 ○계층수와 결재단계 적정성(C)
	인사관리적정성	○정성평가 우선 ○다항목 체크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및 개선노력 ○성과/능력중시 인사제도 운영(C) ○노사화합/생산성을 위한 공동노력
	내부평가제도 적정성	○정성평가 우선 ○다항목 체크	○내부평가제도 구축 및 적용범위(C) ○내부평가제도의 내용 적정성 ○내외부 평가연계 및 결과 활용도
재무적/물적 지원관리시스템	예산관리 적정성	○정성평가 우선 ○정량지표 보완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리성 개선노력
	재무관리 합리성	○정성평가 우선 ○정량지표 보완	○재무계획 수립 적정성 ○금융비용, 재무구조 개선노력
	정보관리 적정성	○정성평가 우선 ○정량지표 보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활용도(C) ○IT활용 내부업무 합리화노력 ○IT활용 고객서비스 개선노력
	시설관리 합리성	○정성평가 우선 ○다항목 체크	○시설/장비관리 규정/제도 적정성 ○시설/장비 관리 성과 개선노력
종합관리성과	인적생산성(전년대비)	○정량평가우선	
	관리효율성(전년대비)	○정량평가 우선	

자료 : 산업기술평가원(2008), T/P 조성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4. 평가지표별 개요 및 측정방법

1) 기본방향

- 평가지표별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적절성, 타당성, 달성도, 횡수 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판별력을 높이기 위해 리코드 척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함.
- 둘째,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에 대한 점수는 4점, 3점, 2점, 1점으로 함.
- 셋째, '여·부, 유·무, 포함·미포함' 등과 같이 'O'나 'X' 형의 평가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O'는 2점, 'X'는 0점으로 함.
- 넷째, 평가그룹별 각 시·군의 순위는 순위평가지표에 대한 측정으로 결정되며, 각 시·군별 최종점수는 세부평가항목에 배정된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함.

2) 부문별 평가지표의 개요 및 측정방법

① 사업기획부문

- 1-1-1 국토계획법 의한 도시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에는 '군기본계획'이라 함.) 속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 당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표지와 함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내용의 사본을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포함'과 '미포함'으로 구분함.

- 1-2-1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 도 지침에 따라 2008년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마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함.
 - 도에서 요구한 마스터플랜(또는 종합계획)의 책자 1권을 제출하며, 도 담당부서에서 수립여부를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수립'과 '미수립'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1-2-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 사업이 해당 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 당해 시·군의 중기재정계획의 내용 중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사본을 제출하며, 도 담당부서에서 반영여부를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반영'과 '미반영'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1-2-3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
 - 도비 풀예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 도비 풀예산에 대한 투·융자심사 요청공문서 및 그 결과의 사본을 제출하며, 도 담당부서에서 이행여부를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2-1-1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의 목표가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함.
 - 사업의 목표 등 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제출.(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는 관련 내용의 사본을 제출)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적절성의 정도를 평가하며, 그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2-1-2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정합성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내용이 적절한 지, 사업의 내용대로 추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 사업목표와 사업내

용 간의 정합성을 평가함.

- 사업목표와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제출함.(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는 관련 내용의 사본을 제출)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합성의 정도를 평가하며, 그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 2-2-1 수요추정의 유무

- 사업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수요추정에 근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함.
- 사업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수요추정을 실시한 근거를 문서로서 제출함.(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는 관련 내용의 사본을 제출)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와 '미실시'로 구분함.

■ 2-2-2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 객관적인 근거 등 수요추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함.
- 당해 시·군은 수요추정의 근거자료를 문서로서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한 수요추정 관련 자료를 통해 수요추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과정에 의해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며, 그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 3-1-1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 사업내용별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국비, 지방비, 만자 등)의 유무에 대하여 평가함.
-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함.(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는 관련 내용의 사본을 제출)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3-1-2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 사업기간 대비 총사업비의 규모와 함께 이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의 적절성을 평가함.
- 각 시·군은 총사업비 대비 연차별 투자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함.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는 관련 내용의 사본을 제출)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그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 3-2-1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계획의 유무와 국비확보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임.
-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와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는 관련 내용의 사본을 제출)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의 정도를 평가하며, 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계획이 있으며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양호' : 계획이 있으며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 '다소 미흡' : 계획은 있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 '미흡' : 계획이 없는 경우

■ 3-2-2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총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와 지방비 확보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함.
- 총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와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는 관련 내용의 사본을 제출)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타당성의 정도를 평가하며, 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계획이 있으며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양호' : 계획이 있으며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 '다소 미흡' : 계획은 있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 '미흡' : 계획이 없는 경우

■ 3-2-3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총사업비에 대한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와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함.
- 총사업비에 대한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와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는 관련내용의 사본을 제출)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계획의 유무와 함께 타당성의 정도를 평가하며, 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계획이 있으며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양호' : 계획이 있으며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 '다소 미흡' : 계획은 있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 '미흡' : 계획이 없는 경우

■ 3-2-4 미확보재원 마련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당해 연도 사업비 가운데 확보하지 못한 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의 유무와 그 확보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함.
- 미확보재원 마련계획의 사본을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타당성의 정도를 평가하며, 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계획이 있으며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양호' : 계획이 있으며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 '다소 미흡' : 계획은 있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 '미흡' : 계획이 없는 경우

<표 3-40> 사업기획부문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배점(안)

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1. 추진근거의 타당성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	포함	2	
			미포함	0	
	2.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	1.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있음	2	
			없음	0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반영	2	
			미반영	0	
		3.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	이행	2	
			미이행	0	
2.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사업 내용과의 정합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사업목표와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2. 사업목표와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수요추정의 유무 및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1. 수요추정의 유무	있음	2	
			없음	0	
		2.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2.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표 3-40>의 계속)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3. 예산계획의 적절성	1. 재원구성의 적절성	1.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있음	2
			없음	0
		2.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예산확보계획의 합리성	1.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3.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4. 미확보재원 마련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② 사업집행부문

- 1-1-1 단체장(또는 부단체장) 주관 회의 횟수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이 직접 주관하여 회의를 개최한 횟수를 평가함.

-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관련 추진상황 보고회의 개최 실적(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도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회의 횟수를 산정함.
 - 평가위원은 도에서 산정한 회의횟수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분기별 3회 이상
 - '양호' : 분기별 2회 이상
 - '다소 미흡' : 분기별 1회 이상
 - '미흡' : 분기별 1회 미만
- 1-1-2 전담조직의 유무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있는가의 유무를 확인함.
 - 당해 시·군의 전담조직의 유무는 도에서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1-1-3 전문가 확보의 여부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담할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전담할 전문가로 위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공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며, 전문가 확보의 여부는 도에서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확보', '미확보'로 구분하여 평가함.
- 1-2-1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 횟수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학·연의 추진협의체가 있는지의 여부와 개최 횟수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함.
 - 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자료(조직 구성, 위원명단 등)와 함께 추진협의체의 개최실적(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문서의 사본을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한 자료와 공문서를 토대로 하여 추진협의체의 유무와 개최횟수를 산정하며, 유무 및 개최횟수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평

가함.

- '우수' : 협의체가 있으며, 개최횟수가 연 5회 이상
- '양호' : 협의체가 있으며, 개최횟수가 연 3~4회
- '다소 미흡' : 협의체가 있으며, 개최횟수가 연 1~2회
- '미흡' : 협의체가 없는 경우

■ 1-2-2 추진협의체 구성의 합리성

-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함.
- 당해 시·군은 추진협의체 위원의 자료(이름, 소속, 전공 등)를 제출하며,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문성과 지역성의 정도를 평가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추진협의체 구성의 합리성 정도를 평가하며, 그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 1-3-1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 횟수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배정한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의 유무와 그 교류 횟수에 대하여 평가함.
- 해 당 시·군은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의 사본을 회의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며,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정기적 만남이 연 5회 이상
 - '양호' : 정기적 만남이 연 3~4회
 - '다소 미흡' : 정기적 만남이 연 2~3회
 - '미흡' : 정기적 만남이 없는 경우

■ 2-1-1 관련부서와의 의견수렴 정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집행에 앞서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공식적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에 대하여 평가함.

- 1 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부서와의 협의를 위한 공문서 사본과 협의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정도를 평가하며, 그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 2-2-1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 여부
 - 전략회의 등에서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도가 시·군에 내린 지침이나 협의사항을 지켰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
 - 평가 시 수용했어야 할 지침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며, 수행하여야 할 각 지침에 대하여 '반영'과 '미반영'으로 평가함.
 - 1차 평가에서는 수용하여야 할 지침이 1개정도일 것으로 예상하나, 수용하여야 할 지침이 1개 이상일 수도 있음.
- 3-1-1 성과지표의 평균달성도
 - 당해 시·군에서 설정한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의 평균(이하 '평균달성도'라 함)에 대하여 평가함.
 - 평균달성도는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 / 성과지표수 × 100으로 계산함.
 - 당해 시·군은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와 전체 평균달성도를 표로 작성, 자치단체장체장의 확인 후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해진 평균달성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평균달성도 90% 이상
 - '양호' : 평균달성도 70% 이상
 - '다소 미흡' : 평균달성도 50% 이상
 - '미흡' : 평균달성도 50%미만
- 3-2-1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비하여 기 확보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평가함.
 - 예산확보율은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 / 당해 연도 필요 사업비 × 100

으로 계산함.

- 당해 시·군은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확보율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예산확보율 100% 이상
 - '양호' : 예산확보율 95% 이상
 - '다소 미흡' : 예산확보율 90% 이상
 - '미흡' : 확보율 90% 미만

■ 3-2-2 당해 연도 도비 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

- 당해 연도 도비 지원 풀예산 대비 확보한 시·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평가함.
- 확보율은 확보한 시·군비 / 당해 연도 도비 지원 풀예산 × 100으로 계산함.
- 당해 시·군은 당해 연도 도비 지원 풀예산 대비 확보한 시·군비를 표로 작성하여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확보율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확보율 100% 이상
 - '양호' : 확보율 70% 이상
 - '다소 미흡' : 확보율 50% 이상
 - '미흡' : 확보율 50% 미만

■ 3-3-1 당해 연도 예산대비 집행율

- 당해 연도에 집행할 예산액 가운데 기집행한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평가함. 다만 도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집행 예산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집행율은 당해 연도 집행한 예산액 / 당해 연도에 집행할 예산액 × 100으로 계산함.

- 당해 시·군은 당해 연도 예산 대비 집행률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집행율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집행율 100% 이상
 - '양호' : 집행율 90% 이상
 - '다소 미흡' : 집행율 80% 이상
 - '미흡' : 집행율 80% 미만
- 3-3-2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 집행 여부
- 당해 연도에 지원된 도비 풀예산의 집행 여부에 대하여 평가함. 다만 도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집행 예산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당해 시·군은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의 집행여부를 표로 작성하여 제출함. 집행여부를 도에서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집행', '미집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4-1-1 민간투자 유치실적
- 총 민자 사업비 가운데 투자가 확보된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평가함.
 - 유치실적율은 투자가 확보된 민자 / 총 민자사업비 × 100으로 계산함.
 - 당해 시·군은 확보된 민자에 대한 자료(기업체명, 투자규모 등)와 총 사업비에서 확보된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유치실적율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유치실적율 80% 이상
 - '양호' : 유치실적율 60% 이상
 - '다소 미흡' : 유치실적율 40% 이상
 - '미흡' : 유치실적율 40% 미만
- 4-1-2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
- 각 시·군에서 수립한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실제 추진된 진척

율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함.

- 진척율은 실제 추진된 실적 / 당해 추진계획 × 100으로 계산함.
- 당해 시·군은 당해 연도별 추진계획과 함께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진척율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진척율 90% 이상
 - '양호' : 진척율 80% 이상
 - '다소 미흡' : 진척율 70% 이상
 - '미흡' : 진척율 70% 미만

■ 4-2-1 주민 인지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을 지역주민의 인지도로 평가함. 인지도는 객관적 평가기관에 의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 도(당해 시·군)는 각 시·군의 주민을 상대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단(또는 전라북도)에 제출함.
- 평가위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주민 인지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인지도 90% 이상
 - '양호' : 인지도 70% 이상
 - '다소 미흡' : 인지도 50% 이상
 - '미흡' : 인지도 50% 미만

<표 3-41> 사업집행부문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배점(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1.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1.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횟수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전담조직의 유무	있음	2
			없음	0
		3. 전문가 확보의 여부	확보	2
			미확보	0
		2.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도	1.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횟수	우수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추진협의체의 구성의 합리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3.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여부 및 정도	1.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 횟수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표 3-41>의 계속)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2. 사업수행체계	1.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1.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정도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도 지침의 수용정도	1.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여부	반영	2
			미반영	0
3. 목표달성도	1. 성과지표 달성도	1. 성과지표의 평균달성도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예산확보정도	1.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당해 연도 도비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3. 예산집행정도	1. 당해 연도 예산대비 집행율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 집행 여부		확보	2	
		미확보	0	

(<표 3-41>의 계속)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4.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1. 추진성과	1. 민자투자 유치실적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2. 홍보실적	1. 주민 인지도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미흡	1

③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

■ 1-1-1 주민 만족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대한 평가로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함.
- 도(당해 시·군)는 각 시·군의 주민을 상대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단(또는 전라북도)에 제출함.
- 평가위원은 도(또는 당해 시·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주민 만족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주민만족도 70% 이상
 - '양호' : 주민만족도 50% 이상
 - '다소 미흡' : 주민만족도가 30% 이상
 - '미흡' : 주민만족도가 30% 미만

- 1-1-2 이용자 만족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로서 이용자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함.
 - 도(당해 시·군)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단(또는 도)에 제출함.
 - 평가위원은 도(또는 당해 시·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이용자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이용자만족도 70% 이상
 - '양호' : 이용자만족도 50% 이상
 - '다소 미흡' : 이용자만족도 30% 이상
 - '미흡' : 이용자만족도가 30% 미만

- 2-1-1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여부
 - 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로서 구체적 성과지표의 발굴, 각 성과지표별 당해 연도의 상태(기준선), 성과지표별 추진단계별 목표치 설정(성과모니터링) 등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함.
 - 당해 시·군은 위에서 설명한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며, '수립'과 '미수립'으로 구분함.

- 2-1-2 성과지표의 타당성
 -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서 성과지표의 타당성은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설정한 성과지표가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잣대인가를 평가함.
 -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평가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위 '2-1-1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여부'를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로 가름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평가함.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함.
- 2-2-1 단계별 추진목표 및 예산 등 계획변경의 유무
 - 기 수립한 단계별 추진목표 및 예산에 대하여 도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변경이 있었느냐에 대하여 평가함.
 - 당해 시·군에 대해 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획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평가하며, 변경의 유무에 따라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함.
- 2-2-2 부진사업의 사유과약과 대책수립 여부 및 타당성
 - 부진한 사업에 대한 사유의 과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의 여부와 그 대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하여 평가함.
 - 당해 시·군은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그 부진사유, 그리고 대책방안 등 부진사업의 사유과약과 대책수립의 여부 및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부진사업의 과약 및 대책수립의 유무 및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함. 유무 및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으로 구분하며,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우수' : 부진사유와 과약이 있었으며, 대책도 합리적이고 타당함.
 - '양호' : 부진사유와 과약은 있으나 합리성과 타당성은 높지 않음.
 - '다소 미흡' : 부진사유와 과약은 있으나 대책은 없음
 - '미흡' : 부진사유와 과약도 대책도 없음

■ 3-1-1 연계사업발굴의 유무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임.
- 당해 시·군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이름과 함께 왜 연계성이 있는지를 설명한 자료를 자치단체장의 확인 후 제출함. 연계성의 유무는 도에서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평가하며, '있음'과 '없음'로 구분함.

■ 3-1-2 세부사업 완료 후 활용 유무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추진결과 완료된 세부사업에 대한 활용의 여부를 평가함.
- 당해 시·군은 1시·군 1프로젝트의 세부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그 완료된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세부사업의 완료 후 활용 여부는 도에서 판단함.
- 평가위원은 도의 판단에 따라 평가하며, '활용'과 '미활용'으로 구분함.

■ 3-2-1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의 여부

- 평가를 통해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임.
- 당해 시·군은 전년도 평가 시 평가위원이 지적·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정하고 개선하였는가 하는 자료, 즉 평가위원이 지적·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조치계획수립 여부를 평가하며, '수립'과 '미수립'으로 구분함.

<표 3-42>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 측정방법 및 배점(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1. 사업의 효과성	1.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1. 주민 만족도	반영	2
			미반영	0
		2. 이용자 만족도	반영	2
			미반영	0
2.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1. 모니터링체제의 구축여부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1.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여부	있음	2
			없음	0
		2.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2. 문제해결 능력	1. 단계별 추진목표 및 예산 등 계획변경의 유무	있음	2
			없음	0
		2. 부진사업의 사유파악과 대책수립 여부 및 타당성	우수	4
			양호	3
			다소 미흡	2
3. 사업개선 노력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1. 연계사업발굴의 유무	있음	2
			없음	0
		2. 세부사업 완료 후 활용 여부	활용	2
			미활용	0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노력	1.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의 여부	수립	2
			미수립	0

5. 평가지표의 세부적 운용방안

1) 평가단계 등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분

(1) 평가단계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분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도 말에 시행할 1차 평가와 2008년도 이후에 평가할 2차 평가로 나누어짐.
- 따라서 개발된 평가지표를 평가단계에 따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1차 평가에만 사용할 평가지표, 2차 평가에만 사용할 평가지표, 1차와 2차 평가 모두에 사용할 평가지표로 구분함.
- ‘마스터플랜의 수립여부’ 평가지표 한 가지만은 1차 평가에서 사용되나, 2차 평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 개발된 평가지표 가운데 1차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는 평가지표는 ‘성과지표의 평균달성도’, ‘주민 인지도’, ‘주민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의 여부’ 등 6개의 평가지표임. 1차 평가에 사용할 평가지표는 총 33개 임(<표 3-43> 참조).

<표 3-43> 평가단계에 따른 평가지표의 조정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단계	
				1차 평가	2차 평가
사 업 기 획 부 문	1. 추진 근거의 타당성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	○	○
		2.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	1.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	×
			2.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
			3.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	○	○
	2. 사업내 용의 합 목적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사업 내용과의 정합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	○	○
			2. 사업목표와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	○
		2. 수요추정의 유무 및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1. 수요추정의 유무	○	○
			2.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	○
	3. 예산 계획의 적절성	1. 재원구성의 적절성	1.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	○
			2.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	○
		2. 예산확보계획의 합리성	1.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
			2.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
			3.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
			4. 미확보재원 마련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

(<표 3-43>의 계속)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단계		
				1차 평가	2차 평가	
사업 집행 부문	1. 추진 주체의 의지 및 역량	1.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횟수	○	○	
			2. 전담조직의 유무	○	○	
			3. 책임자의 전문성	○	○	
		2.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도	1.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횟수	○	○	
			2. 추진협의체의 구성의 합리성	○	○	
			3.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 여부 및 정도	1.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	○
			2. 전담연구자와 교류 횟수	○	○	
	2. 사업 수행 체계	1.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1.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정도	○	○	
		2. 도 지침의 수용정도	2.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여부	○	○	
	3. 목표 달성도	1. 성과지표 달성도	1. 성과지표 달성도	×	○	
			2. 예산확보 정도	1.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	○
			2. 당해 연도 도비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	○	○	
		3. 예산집행 정도	1. 당해 연도 예산대비 집행율	○	○	
			2.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 집행 여부	○	○	
		4. 추진 성과 및 홍보 실적	1. 추진성과	1. 민간투자 유치실적	○	○
	2.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			○	○	
2. 홍보실적	1. 주민 인지도		×	○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	1. 사업의 효과성	1.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1. 주민 만족도	×	○	
			2. 이용자 만족도	×	○	
	2.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1. 모니터링체제의 구축여부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1.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여부	○	○	
			2.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	○	
		2. 문제해결 능력		1. 단계별 추진목표 및 예산 등 계획변경의 유무	○	○
				2. 부진사업의 사유파악과 대책수립 여부 및 타당성	○	○

(<표 3-43>의 계속)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단계	
				1차 평가	2차 평가
사업 효과 및 모니터링	3. 사업 개선 노력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1. 연계사업발굴의 유무	○	○
			2. 세부사업 완료 후 활용의 유무	○	○
		2.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노력	1.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의 유무	×	○

주) '○' 는 평가에 사용하는 지표이며, '×'는 평가에 사용하지 않는 지표임.

(2) 1차 평가에 시용할 평가지표별 성격 구분

- 1차 평가의 경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첫 평가이고, 그 목적이 각 시·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목적이 큼.
- 따라서 1차 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지표를 성격에 따라 '평가대상의 순위를 정하는데 직접 사용할 평가지표(이하 '순위지표'라 함)'와 순위지표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평가지표(이하 '컨설팅 지표'라 함)'로 구분함. 그리고 컨설팅지표는 2차 평가에서는 순위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1차 평가에 사용할 평가지표 가운데 순위지표로 사용될 평가지표와 컨설팅지표로 사용될 평가지표의 구분은 <표 3-44>와 같으며, 1차 평가에 사용할 33개의 평가지표 가운데 15개는 순위지표이며, 18개는 컨설팅지표임.

<표 3-44> 1차 평가에 시용할 평가지표별 성격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성격
사업기획부문	1. 추진근거의 타당성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	○
		2.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사전절차이행여부	1.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
	3.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		●	
	2.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	○
			2. 사업목표와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
		2. 수요추정의 유무 및 근거의 타당성	1. 수요추정의 유무	○
			2. 수요추정근거의 타당성	○
	3. 예산계획의 적절성	1. 재원구성의 적절성	1.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
			2.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
		2. 예산확보계획의 합리성	1. 국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2. 지방비 확보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3. 민자 유치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4. 미확보재원 마련계획의 유무 및 타당성			○	
1.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1.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횟수	●	
		2. 전담조직의 유무	●	
		3. 전문가 확보의 여부	○	
	2.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도	1.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횟수	●	
		2. 추진협의체의 구성의 합리성	●	
	3.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여부 및 정도	1.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횟수	●	
	2. 사업수행체계	1.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1.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정도	○
2. 도 지침의 수용정도		2.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여부	●	

(<표 3-44>의 계속)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성격
사업집행부문	3. 목표 달성도	2. 예산확보 정도	1.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
			2. 당해 연도 도비지원 풀예산 대비 시·군비 확보율	●
	3. 예산집행 정도	3. 예산집행 정도	1. 당해 연도 예산대비 집행율	○
			2. 당해 연도 기 지원 도비 풀예산의 집행 여부	●
	4. 추진성과 및 홍보 실적	1. 추진성과	1. 민간투자 유지실적	○
			2.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진척율	●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	2.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1. 모니터링체제의 구축 여부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1.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여부	○
			2. 문제해결 능력	1. 단계별 추진목표 및 예산 등 계획변경의 유무
	3. 사업개선 노력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2. 세부사업별 부진사업의 사유파악과 대책수립의 여부 및 타당성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1. 연계사업발굴의 유무
	3. 사업개선 노력	1. 사업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		2. 세부사업 완료 후 활용의 여부

주) ‘○’는 컨설팅지표이며, ‘●’는 ‘순위지표’임.

6. 순위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1) 순위지표의 배점현황

- 1차 평가에 있어 평가대상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순위지표별 배점현황을 살펴보면 <표 3-45>와 같음. 즉 순위지표의 총점은 46점임.
- 평가부문별로 살펴보면, 사업기획부문이 46점 가운데 8점으로서 1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집행부문이 46점 가운데 34점으로서 73.9%의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부문은 46점 가운데 4점으로서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45> 순위지표별 배점현황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총점	46점 (100.0%)	-	-	-	-	-	-
사업 기획	8점 (17.4%) (100.0%)	1. 추진근거의 타당성	6점 (75.0%)	2.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	6점	1. 마스터플랜의 수립 여부	2점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2점
						3. 투·융자심사의 이행 여부	2점
		3. 예산계획의 적절성	2점 (25.0%)	1. 재원구성의 적절성	2점	1. 사업내용별 사업비 세부내역의 유무	2점
사업 집행	34점 (73.9%) (100.0%)	1.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18점 (52.9%)	1.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행정지원 정도	6점	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회의 횟수	4점
						2. 전담조직의 유무	2점
				2. 지역구성원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도	8점	1. 추진협의체의 유무 및 개최 횟수	4점
						2. 추진협의체의 구성의 합리성	4점
		3. 시·군 전담연구자 활용여부 및 정도	4점	1. 전담연구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유무 및 교류횟수	4점		
						2. 시·군이 수용하여야 할 지침의 수용여부	2점
		2. 사업수행 체계	2점 (5.9%)	2. 도 지침의 수용정도	2점		
						1. 당해 연도 사업비 대비 예산 확보율	4점
		3. 목표 달성도	10점 (29.4%)	2. 예산확보 정도	8점		
						3. 예산집행 정도	2점
4.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	4점 (11.8%)			1. 추진성과	4점		
		2. 사업효과 및 모니터링	4점 (8.7%) (100.0%)			2.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4점 (100.0%)

- 평가부문별 비중을 살펴볼 때, 사업집행부문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사업집행부문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 수를 고려할 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기획부문의 8점 가운데 ‘추진근거의 타당성’이 6점으로 75.0%의 비중을 차지하며, ‘예산계획의 적절성’이 2점으로 2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추진근거의 타당성과 관련한 평가지표가 3개이고, 예산계획의 적절성과 관련한 평가지표가 1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함.
- 또한 사업집행부문의 34점 가운데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이 18점으로 5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수행체계’는 2점으로 5.9%의 비중을 차지함. 그리고 ‘목표달성도’는 10점으로 2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추진성과 및 홍보실적’은 4점으로 11.8%의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각각의 평가항목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수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평가지표나,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항목, 평가부문에 대한 가중치의 부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다만 평가시점에 있어 평가주체(전라북도)의 판단에 의해 특정 평가지표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

제4장

JDI

운영방안 및 정책제언

제 1 절 평가절차

제 2 절 평가방법 및 순위결정 절차

제 3 절 정책제언

제 4 장 운영방안 및 정책제언

제 1 절 평가절차

1. 기본방향

- 일반적으로 사업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대부분 피평가자가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자 또는 평가위원에 의한 외부평가를 시행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1차 평가는 피평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평가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함.

2. 단계별 방향

1) 1단계 : 평가대상 확정 및 평가계획서의 작성

- 도는 자문위원과 14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연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시·군의 당해 연도 추진단계를 고려한 평가목표,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서를 제시함.

2) 2단계 : 평가단, 평가팀,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 전라북도는 해당 시·군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단을 구성함.
 - 평가위원 선정의 한 방법으로서 피평가자인 각 시·군에서도 평가위원을 추천토록 함.

- 현재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정되어 있는 전담연구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함
- 평가단을 사업성격에 따른 그룹화에 따라 신규사업평가팀과 계속사업평가팀으로 구분함. 그리고 각 평가팀별로 1명의 팀장을 선정함.
- 평가단장과 각 평가팀장을 위원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와 각 평가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

3) 3단계 :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의 취합 및 정리

-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 시·군에 송부한 평가계획서에 따라 작성한 평가자료를 취합하고,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정리함.

4) 4단계 : 평가단 회의개최 및 평가실시

- 평가실시 전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본 평가의 의미와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하여 평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 신규사업평가팀과 계속사업평가팀별로 평가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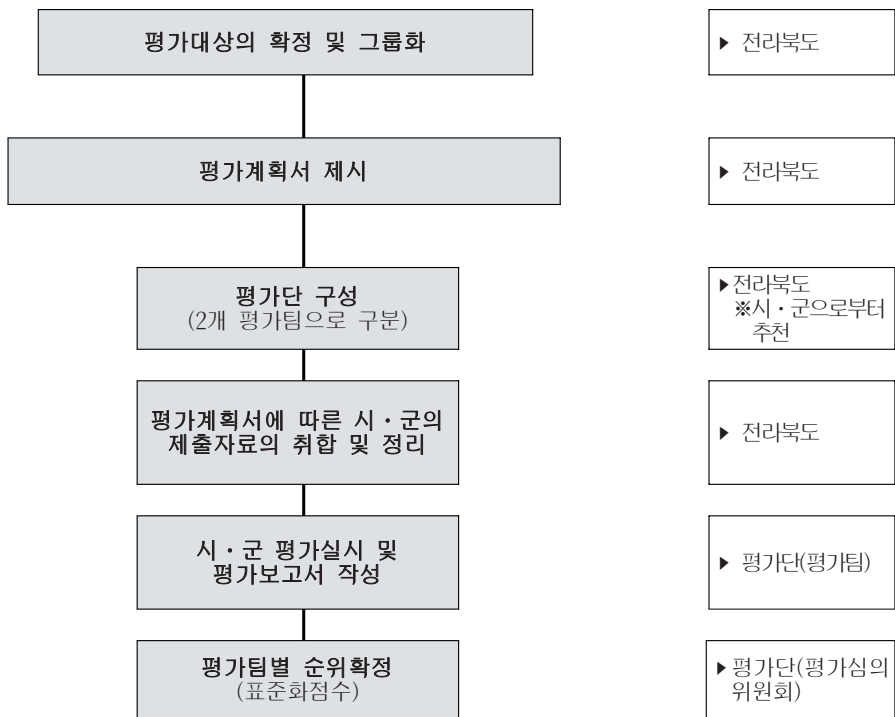
5) 5단계 : 평가결과의 취합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도에서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배정함.

- 각 평가위원은 평가결과와 평가 시 느낀 점을 토대로 양식에 따라 잘한 점, 개선하여야 할 점 등 평가결과보고서를 평가대상 시·군별로 작성하며, 각 평가팀장은 이를 취합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함.

6) 6단계 :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팀별 순위결정

- 평가단장과 평가팀장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평가팀이 제출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와 평가결과보고서를 확인함.
-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각 평가팀별로 평가대상의 순위를 확정함.



<그림 4-1> 평가절차도

제 2 절 평가방법 및 순위결정 절차

1. 평가방법

- 먼저 평가단 구성에 있어, 동일한 평가지표라 할지라도 평가위원에 따라 평가의 등급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대상 그룹별로 동일한 평가자가 동시에 평가하도록 함. 따라서, 1차 평가의 경우 평가단을 ‘신규사업평가팀’과 ‘계속사업평가팀’으로 2개의 평가팀을 구성함.
- 각 평가팀의 평가위원 수는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짝수 보다는 홀수가 바람직하며, 평가지표의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5인 또는 7인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2개 평가팀이 동시에 평가할 것을 전체로 할 때, 10인 또는 14인 평가위원이 필요하며,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1인 또는 15인으로 구성함.

2. 순위결정 절차

- 각 평가팀별로 해당 시·군에 대한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 간 평가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크게 두 가지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하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는 방법임. 즉 해당 시·군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가운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후 이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가 크고 평가위원의 수가 많을 때 적절한 방법임.
- 다른 하나는 해당 시·군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표준화점수(Z-score)로 변환하는 방법임. 즉 해당 시·군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통계기법에 따라 표준화점수(Z-score)로 변환하고 이 표준화점수를 합산한 후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가 작고 평가위원의 수가 많지 않을 때 적절함.

- 따라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위원의 수, 평가위원 간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위 두 가지 방법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평가대상의 순위를 결정함. 다만 평가실시 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순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여야 함.

제 3 절 정책제언

- 평가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평가들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일회적 또는 단기적 평가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평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평가방법에 있어서 피평가자는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평가자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를 평가하는 평면적 평가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사업시행자, 주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 좀 더 지역밀착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또한 평가결과보다 평가과정을 통해 도내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한편, 본 연구는 지역특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지역성장 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일환으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평가지표는 사업의 추진 정도, 사업내용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평가지표의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둘째, 1차 평가에 사용할 33개의 평가지표 가운데 15개 만이 순위지표이며, 나머지 18개는 컨설팅지표임. 그러나 컨설팅지표 가운데는 2차 평가 시 반드시 순위지표로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지표가 많음. 따라서 컨설팅지표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셋째, 2차 평가에 있어서는 사업내용별 그룹화에 따른 개별평가지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특히, 개별평가지표는 각 시·군이 제시하여야 할 성과지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넷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지역주민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되어야 함. 이를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풀예산 가운데 일정비율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조사와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과학기술본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지침』. 2007.
-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지침』. 200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계정 지역단위평가』. 2006.
- 김희수. 『200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5.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기반 및 도시대상 평가체제 구축』. 건설교통부. 2007.
- 이양재 외. 『거점 중소도시 사업계획 수립 메뉴얼 작성연구』. 행정자치부. 2007.
- 장재홍 외. 『지역산업정책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2002.
-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2006.

전발연 2008-R-19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효율적 운영방안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발행인 | 신기덕

발행일 | 2008년 10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978-89-92471-51-0 93350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